

# 울진후포 오션더캐슬 입주자모집공고



※ 본 아파트 입주자모집공고의 내용을 숙지한 후 청약 및 계약에 응하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한 착오행위 등에 대하여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울진후포 오션더캐슬 분양상담전화(☎054-787-0200) 등을 통해 입주자모집공고의 내용과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담을 실시하고 있으나, 청약자 개인의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에 대하여 정확하지 않은 정보 제공으로 청약 관련 사항에 대한 착오 안내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고객 여러분께서는 청약과 관련된 상담은 청약의 참고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청약자 본인이 입주자 모집공고를 통해 청약자격 등을 숙지하시어 주민등록표 등·초본, 등기사항증명서 및 소득 관련 서류 등을 발급받아 직접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라며, 사전에 한국부동산원 `청약 Home ([www.applyhome.co.kr](http://www.applyhome.co.kr))의 청약자격사전관리 및 청약가상체험을 통하여 착오 신청 등에 대한 불이익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콜센터는 청약홈 홈페이지([www.applyhome.co.kr](http://www.applyhome.co.kr)) 이용안내 및 기본적인 청약자격 상담을 하고 있으며 고객 상담 과정에서 청약자 개인의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에 대한 정확하지 않은 정보의 제공으로 일부 착오 안내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청약콜센터 상담내용은 법적 효력이 없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라며 청약자격 미숙지, 착오신청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자세한 문의사항은 사업주체를 통해 확인하시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는 2023.11.10.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적용됩니다.**
- 본 아파트의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24.02.16.**입니다.(청약자격조건의 기간, 나이, 지역우선 등의 청약자격조건 판단기준일입니다.)
- 해당 주택건설지역(경상북도 울진군)은 「주택법」 제63조 및 제63조의2에 의한 비투기과열지구 및 비청약과열지역으로서, 본 아파트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1주택 이상 소유한 세대에 속한 분도 1순위 자격이 부여됩니다.
- 본 아파트는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모든 주택(민간 사전청약, 분양주택,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에 한하여 1인 1건만 신청이 가능하며, **2건 이상 중복신청 시 모두 무효처리 또는 당첨자 선정 이후에도 당첨 무효(예비입주자 지위 무효)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는 수도권 외 비투기과열지구 및 비청약과열지역의 민간택지에서 공급하는 분양가상한제 미적용 민영주택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에 따른 해당첨 제한을 적용받지 않고 기존 주택 당첨여부와 관계없이 본 아파트 청약이 가능합니다.(단, 본 제도는 당첨된 청약통장의 재사용을 허용하는 제도가 아니므로 당첨된 청약통장은 계약여부와 관계없이 재사용이 불가합니다.)
- 해당 주택건설지역 (경상북도 울진군)은 「주택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비투기과열지구이며, 본 아파트는 민간택지에서 공급하는 아파트로서 「주택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분양권 전매 제한이 없습니다. 단, 계약금(총 공급금액의 10%)완납 후 전매가 가능하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전매금지 및 해당첨제한 등의 사항은 청약시점의 관계 법규의 적용을 받으며, 향후 관계법규 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의 당첨자로 선정 시 당첨자 및 세대에 속한 자는 당첨일로부터 향후 5년간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1순위 청약접수가 제한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24.02.16.) 현재 울진군에 거주하거나 대구광역시 및 경상북도에 거주(주민등록표등본 기준)하는 만19세 이상인 자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부양) [국내에서 거주하는 재외동포(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 및 외국인 포함]의 경우 청약이 가능합니다. 다만 청약 신청자 중 같은 순위 내에 경쟁이 있을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인 경상북도 울진군 거주자가 우선합니다.
- 2019.11.0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5항 및 제23조 제2항 제7호에 따라 우선공급 받으려는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제88조의 출입국사실증명서를 사업주체에 제출해야 합니다. 장기해외체류자는 해당 주택건설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신청이 불가하며, 이를 위반하여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로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에는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됩니다.

출입국사실증명서 해외체류기간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한 기간(입국 후 7일 내 동일국가 재출국 시 계속하여 해외에 체류한 것으로 봄)은 국내 거주로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해당 주택건설지역으로 청약할 수 없습니다. 단, 90일 이내의 여행, 출장, 파견 등 단기 해외체류는 국내거주로 간주되어 해당 주택건설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청약 가능합니다.

- 사례1)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으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으로 청약 가능합니다.
- 사례2)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으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한 경우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으로 불인정되며 기타지역 거주자로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8항에 따라 세대원 중 주택공급신청자만 생업에 직접 종사하기 위하여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2호의 주택공급 대상자로서 미성년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주로서 각 목의 자녀 및 형제자매는 주택공급을 신청하는 미성년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 가.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 나. 직계 존속의 사망, 실종 신고 및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해야 하는 경우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2의3호, 제2조제4호에 의거 ‘세대’ 및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정의가 변경되었습니다.

- “세대”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이하 “세대원”)으로 구성된 집단(주택공급신청자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제외)

가. 주택공급신청자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부모, 장안·장모, 시부·시모, 조부·조모, 외조부·외조모 등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이하 같음)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아들·딸, 사위·며느리, 손자·손녀, 외손자·외손녀 등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전혼자녀 등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 제1호 나목에 의거 주택(분양권 등 포함)을 소유하고 있는 직계존속과 직계존속의 배우자는 가점제 항목의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습니다.

부양가족 판단 시 직계비속은 미혼자녀와 부모가 모두 사망한 미혼의 손자녀인 경우에 한정하여 인정됩니다.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7호의2, 제23조제4항, 제53조에 의거 분양권 및 입주권(이하 “분양권 등”)을 소유한 경우 주택 소유로 간주하오니, 주택소유 여부 판정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기타 주택소유 여부 판정기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참조)

※ 주택 소유로 보는 분양권등의 범위(국토교통부령 부칙 제3조, 제565호, 2018.12.11. 시행)

- 분양권등 신규 계약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임주자모집공고, 관리처분계획(정비사업) 또는 사업계획(지역주택조합)’ 승인을 신청한 주택의 분양권등부터 적용하며, ‘공급 계약 체결일’ 기준 주택 소유로 봄(\*미분양 주택을 최초로 공급받은 경우는 제외되나, 해당 분양권 등을 매수한 경우 주택소유로 봄)

- 분양권등 매수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매수 신고한 분양권등부터 적용하며, ‘(실거래 신고서상) 매매대금 완납일’을 기준으로 주택 소유로 봄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7호의3에 의거 “소형·저가주택등”은 분양권 등을 포함하며, 공급계약서의 공급가격(선택품목 제외)을 기준으로 가격을 판단합니다.

※ “소형·저가주택등”이란,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로서 주택가격이 1억원(수도권은 1억6천만원) 이하인 주택 또는 분양권등(주택가격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 제1호 가목2)의 기준에 따름)

■ 2023.05.10.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11호에 의거 임차인으로서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받지 못한 사람이 임차주택을 경매 또는 공매로 낙찰받은 주택의 경우 소유 기간은 무주택기간에 포함됩니다. (단, 전용 85㎡ 이하이면서 주택공시가격이 1억5천만원(수도권은 3억원) 이하인 경우에 한함)

■ 신청자격은 당첨자를 대상으로 전산조회, 제출서류 등을 통해 사업주체에서 확인하며, 확인결과 신청자격과 다르게 당첨된 사실이 판명될 경우에는 부적격 당첨자로서 불이익(계약체결 불가, 일정기간 입주자저축 사용 및 입주자선정 제한 등)을 받으니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문의 신청자격, 기준, 일정, 방법, 유의사항 등을 정확히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자격	일반공급	
	1순위 필요 (1순위, 6개월이상, 예치금) ※ 지역별/면적별 예치금 이상인 자	2순위 필요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청약통장		
세대주 요건	-	-
소득 또는 자산기준	-	-

※ 1순위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가입기간이 6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납입한 자

※ 2순위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였으나, 1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자

■ 본 아파트는 건전한 청약문화 정착을 위한 정부의 방침에 따라 인터넷 청약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청약 이전에 ①청약통장 가입은행 및 취급은행을 방문하여 인터넷뱅킹 가입 및 공동인증서를 신청접수일 이전에 미리 발급받거나, ②금융인증서, ③네이버인증서, ④KB국민인증서, ⑤토스인증서 또는 신한인증서를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한국부동산원에서 운영하는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청약 신청자의 편의를 위하여 인터넷 청약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으며, 아래와 같이 인증서 로그인이 가능하오니 서비스 이용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청약신청 구분	공동인증서 (홍 공민인증서)	금융인증서 (YESKEY)	네이버인증서	KB국민인증서	토스인증서	신한인증서
APT(특별공급/1·2순위) / 오피스텔 / 생활형 숙박시설 / 도시형생활주택 / (공공지원)민간임대	○	○	○	○	○	○
APT무순위 / 임의공급 / 취소후재공급(계약취소주택)	○	○	X	X	X	X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0조 제1항에 따라 **일반공급 입주자 선정 및 동·호수 배정은 한국부동산원에서 실시합니다.**
-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은 본 주택의 해당순위(일반공급 1순위, 2순위)의 청약자격과 입주자지속 요건을 충족 시,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지 않아도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것으로 봅니다.
- 고령자, 장애인, 다자녀가구(단, 미성년자녀 3명 이상)의 최하층 우선배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1조 규정에 의거 제1호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5세 이상인 자 또는 그 세대에 속한 자, 제2호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발급된 자 또는 그 세대에 속한 자, 제3호 미성년자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자 또는 세대에 속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주택공급신청 시 최하층의 주택배정을 희망한 당청자에 대해서 해당 층을 우선 배정하오니 청약 시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최하층이라 함은 1층을 말하며 1층이 없는 경우 최저층을 말하며, 해당 주택의 분양 가격이 바로 위층 주택의 분양가격보다 높은 경우는 제외한다)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와 제3호에 해당하는 자 사이에 경쟁이 있으면,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우선 배정합니다. 단, 신청자가 많은 경우 다른 층을 배정받을 수 있고, 적은 경우에는 미신청자(최하층 우선배정 신청 비대상자 포함)에게도 최하층이 배정될 수 있습니다.
- 신청접수는 당청자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청약홈 및 LH청약플러스 등의 기관을 통해 청약접수 및 당첨자 선정을 진행하는 경우 포함)에 대하여 1인 1건만 신청가능하며, 1인 2건 이상 청약신청 할 경우에는 모두 무효처리 및 (민간 사전청약)당첨자 선정 후에도 무효처리 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 신청한 주택의 신청취소는 신청 당일 청약신청 마감 이전까지 가능하며, 청약 접수 종료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신청 취소 및 변경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17.09.20.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제6항제2호에 의거 본 주택에 가정제로 당첨되신 분은 당첨일로부터 2년간 가정제 당첨 제한자로 관리되오니, 향후 당첨자 본인 및 세대원이 가정제가 적용되는 민영주택에 청약하는 경우 가정제 제한사항 적용여부를 확인하신 후 청약하시기 바랍니다.(‘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 마이페이지 > 청약제한사항)
- 본 아파트에 1순위 청약 시 모집공고일 현재 과거 2년 이내 가정제로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는 추첨제로 청약접수 해야 합니다. 또한, 가정제 제한 청약자가 가정제로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 부적격 처리 되오니 청약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2순위 접수방법이 ‘청약신청금 납부’에서 ‘청약통장 사용’으로 변경되었으니 2순위로 청약하고자 하시는 분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지역별 예치금액과 상관없이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예·부금 포함)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의2제1항 및 제26조제1항에 따라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일반공급은 순위에 따라 대상 주택수의 **500퍼센트를 예비입주자로 선정합니다.** 선정된 예비입주자 현황은 **최초 공급계약 체결일로부터 180일까지**(예비입주자가 소진될 경우에는 그 때까지로 함) 당사의 인터넷 홈페이지(www.oceanthecastle.com)에 공개되며, 공개기간이 경과한 다음 날에 예비입주자의 지위는 소멸되며, 예비입주자의 지위가 소멸된 때 예비입주자와 관련한 개인정보는 파기처리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019.12.06.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에 의거 일반공급 예비입주자는 청약신청자가 예비입주자 선정 총수에 미달되어도 가점이 높은 순으로 예비순번을 부여합니다.
  - 일반공급 예비입주자 선정 시 주택형별로 공급세대수의 500%를 아래와 같이 선정합니다.
    - 1순위 : 공급세대수의 500%까지 지역우선공급을 적용하여 가점이 높은 자를 앞 순번으로 선정
      - \* 가정제가 적용되지 않는 주택인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
    - 2순위 : 1순위에서 미달된 예비공급세대수 만큼 지역우선공급을 적용하여 추첨으로 선정
- 일반공급 입주자로 선정된 자 중 당첨이 취소되거나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자 또는 공급계약을 해약한 자가 있으면 소명기간이 지난 후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순번에 따라 공급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 일반공급의 당첨 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과 해당 주택의 동·호수를 공개한 후 동·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의 참가의사를 표시한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 대하여는 일반공급 물량을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하여 공급합니다.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제6항에 의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다른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예비입주자로서 주택을 공급받을 수 없으며, 동·호수 배정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예비입주자의 동호수배정일(당첨일)이 입주자 선정일보다 빠른 경우 예비입주자 계약체결은 가능하며 입주자선정내역은 무효처리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9조제2항에 따라 주택의 공급계약은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사실 공고일로부터 11일이 경과한 후 3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기간 동안에 체결합니다.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지속 순위요건을 만족하였으나, 청약 신청 전 청약통장을 해지한 경우에는 청약이 불가합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을 계약 체결한 경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급계약 및 분양권 전매 시 부동산 실거래 대상이 되며, 최초 공급계약의 경우 동법 제3조에 따라 공급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관청에 부동산거래의 신고를 사업주체와 공동으로 하여야 하므로 부동산 거래신고에 따른 일정한 서류를 사업주체에 제공하여야 하며, 신고를 거부하거나 서류미제출로 인하여 발생하는 과태료 부과 등의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의 전매제한기간 및 재당첨 제한(항후 관련 법령 등 개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구분	기간	관련 법령
전매제한기간	제한 없음	『주택법 시행령』 제73조제1항[별표 3] 5호 <b>내역의 2)</b>

- 본 아파트는 실입주자를 위하여 건립되는 것이므로 투기 대상이 될 수 없으며, 불법행위 등으로 주택공급 질서를 어지럽힐 시에는 법에 따라 처벌됩니다.
- 위장전입 및 불법 전매제한 등을 통한 부정한 당첨자는 「주택법」 제65조 및 「주민등록법」 제37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또한 2021.02.19.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6조에 따라 「주택

법」 제64조제1항 및 제65조제1항을 위반하여 적발된 경우, 위반한 행위를 적발한 날부터 10년간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투기적발자 처벌(「주택법」 제65조 및 제101조)

※ 분양과 관련하여 주택 청약통장 및 주택 분양권을 불법 거래하다가 적발된 자는 「주택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주택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며, 형사 고발되어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거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 받게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주택법」 제64조 제1항을 위반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을 전매하거나 이의 전매를 알선한 자 및 「주택법」 제65조 제1항을 위반한 자에 해당하는 자로서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이익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을 부과 받게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주택법」 제65조 제1항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10년의 범위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의 입주자 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불법거래를 알선 또는 중개한 부동산업자에 대해서도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자격정지, 등록취소 등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 이와 관련하여 법원 등 공공기관으로부터 법 위반 여부 확인 등을 위한 개인정보 요구 시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 최초 계약자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분양계약이 취소되어 매수자(전매포함)가 받은 손해에 대해서는 사업주체의 책임이 없습니다.

■ 유의사항 및 제한사항 등 본인의 자격사항에 대해 청약자 본인이 직접 확인 후 청약하시어 부적격당첨으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제3항에 의거 부적격으로 당첨이 취소된 자는 향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당첨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민간 사전청약 및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본 아파트의 부적격 당첨자로 판정된 자는 예비입주자 선정 이후 무순위 청약 및 임의공급 대상에 포함될 수 없습니다.

■ 아파트 공급계약서는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부동산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로서 인지세 납부 대상이 되며, 공급계약 체결 시 사업주체와 분양계약자는 과세기준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각 1/2씩 분담하여 정부수입인지 형태로 납부하기로 합니다. 또한, 분양계약자가 분담부분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납부하지 않거나 과소 납부, 인지분실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분양계약자에게 있습니다. 정부 수입인지는 취급 금융기관에 방문하여 구매하거나, 전자수입인지사이트 (<https://www.e-revenuestamp.or.kr>)에서 발급 가능하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소비세과(☎126)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계약체결 이후 부적격 당첨, 공급질서 교란행위, 통장매매, 위장전입 등의 사유로 계약이 취소될 경우 사업주체에 인지세 환부를 요구할 수 없으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부동산계약서는 인지세 과세대상으로 수입인지(기재금액 1억원 이상~10억원 이하인 경우 15만원, 10억을 초과하는 경우 35만원)를 계약서 작성시점에 계약서에 첨부하여야 하며, 해당 수입인지는 소유권 이전등기 시 필수 제출 서류로 계약서와 함께 보관하여야 합니다.

- 납부방법

정부수입인지는 전자수입인지 사이트(e-revenuestamp.or.kr)에서 구매 후 출력하여 계약서에 첨부하거나, 우체국은행에서 구매가 가능합니다.

※ 정부수입인지는 분양권에 매매 당사자뿐만 아니라 물건을 중개하는 공인중개사나 등기 대행하는 법무사도 구매하여 첨부할 수 있습니다.

※ 정부수입인지는 1회에 한하여 출력되므로 직접 출력 시 반드시 프린터 상태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재발행 불가)

■ 청약 및 계약 등 주요일정을 안내해 드립니다.

구 분	일반1순위	일반2순위	당첨자발표	당첨자 서류제출	계약체결
일 정	2월 26일(월)	2월 27일(화)	3월 5일(화)	3월 9일(토) ~ 3월 13일(수)	3월 18일(월) ~ 3월 20일(수)
방 법	인터넷 청약 (09:00 ~ 17:30)	인터넷 청약 (09:00 ~ 17:30)	개별조회 (청약home 로그인 후 조회 가능)	방문(별도 안내)	
장 소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 PC : <a href="http://www.applyhome.co.kr">www.applyhome.co.kr</a> - 스마트폰앱 * 청약통장 가입은행 구분 없음			울진후포 오션더캐슬 견본주택 (경상북도 울진군 후포면 삼울리 318-7) * 예비입주자 서류제출 및 계약체결 일정은 추후 별도 안내	

※ 고령자, 장애인 등 인터넷 청약이 불가한 경우에 한해 일반공급은 청약통장 가입은행 본·지점(09:00~16:00)에서 청약 가능합니다.

(단, 은행 영업정별 업무 시간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신 후 방문하시기 바람).

※ 청약 신청한 주택의 신청취소는 신청 당일 청약신청 마감 이전까지 가능하며, 청약 접수 종료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신청 취소 및 변경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스마트폰앱 : 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 스마트폰 앱을 이용하여 청약할 경우에는 청약일 상당 기간 전에 앱을 설치하고 청약 시 사용할 공동인증서를 청약홈 앱으로 미리 저장하시거나, 금융인증서, 네이버인증서, KB국민인증서, 토스인증서 또는 신한인증서를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청약 당일 인증서 설치 문제로 청약이 곤란할 경우에는 PC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23.11.10. 시행된 내용 관련 자세한 사항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참조하시기 바람이며,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문은 작성 당시 법령 및 정책 등의 규정에 의거하여 작성하였으며, 이후 정책변경 및 법 개정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I 공급내역 및 공급금액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울진군청 민원실 - 9292호(2024.02.16.)**로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 **공급위치** : 경상북도 울진군 후포면 금음리 5-4외 1필지
- **공급규모 및 내역** : 아파트 지하 1층~지상 29층 2개동, 총 123세대 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 근린생활시설
- **입주시기**: 2026년 06월 예정(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합니다)

### ■ 공급대상

(단위 : ㎡, 세대)

주택 구분	주택관리번호	모델	주택형 (전용면적기준)	약식표기	주택공급면적(㎡)			기타공용면적 (기계실 등)	계약면적	세대별 대지지분	총공급 세대수	일반공급 세대수	최하층 우선배정 세대수
					주거 전용면적	주거 공용면적	소계						
민영 주택	2024000067	01	084.9988A	84A	84.9988	29.5487	114.5475	36.5215	151.0690	24.6900	48	48	2
		02	084.9979B	84B	84.9979	30.2537	115.2516	36.5211	151.7727	24.6900	24	24	1
		03	084.9929C	84C	84.9929	30.0543	115.0472	36.5190	151.5662	24.6800	24	24	1
		04	084.9948D	84D	84.9948	29.9089	114.9037	36.5198	151.4235	24.6800	24	24	1
		05	129.4143	129	129.4143	44.2297	173.6440	55.6055	229.2495	37.5900	1	1	-
		06	147.6731	147	147.6731	50.9017	198.5748	63.4508	262.0256	42.8900	1	1	-
		07	176.0451	176	176.0451	60.7086	236.7537	75.6414	312.3951	51.1300	1	1	-
합계											123	123	5

- ※ 주택형의 구분은 공고상의 표기이며, 건본주택 및 홍보 제작물은 약식으로 표현되었으니, 청약 및 계약 시 주택형에 대한 혼돈 방지에 특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청약신청 시 반드시 위 공급대상의 '주택형'으로 청약하여야 합니다.
- ※ 주택의 표기방식은 종전(전용면적+주거공용면적)에서 주거전용면적만 표기하도록 변경되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평형환산방법 : 공급면적(㎡) × 0.3025 또는 공급면적(㎡) ÷ 3.3058)
- ※ 최하층이라 함은 각 호의 최저층을 말하며 1층이 필로티인 경우 필로티 바로 위층을 최저층으로 합니다.
- ※ 상기 면적은 소수점 넷째 자리까지 표기되어, 소수점 이하 단수조정으로 면적이 상이할 수 있으며, 전체 연면적과 세대별 계약면적과의 합계는 약간의 오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추후 등기를 위해 소수점 자리의 표기 방식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전용면적은 안목치수로 산정하며, 전용면적 및 계약면적은 소수점 이하 단수 조정으로 등기 면적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 ※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벽체, 주동출입구 등의 면적이며, 기타공용면적은 관리사무소 등 부대복리시설, 보안 및 설비관련시설, 기계실, 전기실 등을 포함한 기타면적입니다.
- ※ 각 세대별 주거공용면적은 본 아파트 주거공용면적을 세대 타입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재배분한 것으로 계약상 주거공용면적이 해당세대 또는 동의 공용부분 실제 면적과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 ※ 각 세대별 기타공용면적은 주택형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된 것으로 실제 면적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으며 면적 배분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 각 세대별 대지지분은 주택형별 공급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하였으며, 향후 지적확정측량 결과 및 공부정리 결과에 따라 법령이 허용하는 오차 범위 내에서 공급면적 및 대지면적 증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 ※ 각 세대별 계약면적에는 계단, 복도, 세대벽체면적 등 주거공용면적과 주차장 등의 기타공용면적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 상기 세대별 공급면적, 계약면적 및 대지지분은 인·허가 과정,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 소수점 이하 단수정리에 따라 실제 등기 시 공급면적 및 대지지분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 당 사업지의 대지면적이 인접건물 대지의 영향으로 대지면적이 변동할 수 있음을 확인하고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 ※ 입주예정 시기는 공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니, 정확한 입주 시기는 추후 개별 통보합니다.

■ 공급금액 및 납부일정

(단위:원)

주택형	타입	세대수	동별/ 라인별	층구분	세대 수	분양가격				계약금(10%)		중도금(60%)						잔금 (30%)	
						대지비	건축비	부가가치세	계	계약시	계약후 30일 이내	1차(10%)	2차(10%)	3차(10%)	4차(10%)	5차(10%)	6차(10%)		
												2024.07.25	2024.10.25	2025.01.24	2025.04.25	2025.08.25	2025.12.24		입주지정일
84.9988A	84A	48	101동 2호 102동 1호	5층	2	22,426,700	442,473,300	-	464,900,000	10,000,000	36,490,000	46,490,000	46,490,000	46,490,000	46,490,000	46,490,000	46,490,000	139,470,000	
				6~7층	4	22,426,700	447,073,300	-	469,500,000	10,000,000	36,950,000	46,950,000	46,950,000	46,950,000	46,950,000	46,950,000	46,950,000	46,950,000	140,850,000
				8~9층	4	22,426,700	451,773,300	-	474,200,000	10,000,000	37,420,000	47,420,000	47,420,000	47,420,000	47,420,000	47,420,000	47,420,000	47,420,000	142,260,000
				10~14층	10	22,426,700	456,473,300	-	478,900,000	10,000,000	37,890,000	47,890,000	47,890,000	47,890,000	47,890,000	47,890,000	47,890,000	47,890,000	143,670,000
				15~19층	10	22,426,700	461,173,300	-	483,600,000	10,000,000	38,360,000	48,360,000	48,360,000	48,360,000	48,360,000	48,360,000	48,360,000	48,360,000	145,080,000
				20~24층	10	22,426,700	465,873,300	-	488,300,000	10,000,000	38,830,000	48,830,000	48,830,000	48,830,000	48,830,000	48,830,000	48,830,000	48,830,000	146,490,000
				25~28층	8	22,426,700	470,573,300	-	493,000,000	10,000,000	39,300,000	49,300,000	49,300,000	49,300,000	49,300,000	49,300,000	49,300,000	49,300,000	147,900,000
84.9979B	84B	24	101동 1호	5층	1	22,426,400	435,373,600	-	457,800,000	10,000,000	35,780,000	45,780,000	45,780,000	45,780,000	45,780,000	45,780,000	45,780,000	137,340,000	
				6~7층	2	22,426,400	439,973,600	-	462,400,000	10,000,000	36,240,000	46,240,000	46,240,000	46,240,000	46,240,000	46,240,000	46,240,000	138,720,000	
				8~9층	2	22,426,400	444,673,600	-	467,100,000	10,000,000	36,710,000	46,710,000	46,710,000	46,710,000	46,710,000	46,710,000	46,710,000	140,130,000	
				10~14층	5	22,426,400	449,373,600	-	471,800,000	10,000,000	37,180,000	47,180,000	47,180,000	47,180,000	47,180,000	47,180,000	47,180,000	141,540,000	
				15~19층	5	22,426,400	454,173,600	-	476,600,000	10,000,000	37,660,000	47,660,000	47,660,000	47,660,000	47,660,000	47,660,000	47,660,000	142,980,000	
				20~24층	5	22,426,400	458,873,600	-	481,300,000	10,000,000	38,130,000	48,130,000	48,130,000	48,130,000	48,130,000	48,130,000	48,130,000	144,390,000	
				25~28층	4	22,426,400	463,573,600	-	486,000,000	10,000,000	38,600,000	48,600,000	48,600,000	48,600,000	48,600,000	48,600,000	48,600,000	145,800,000	
84.9929C	84C	24	102동 3호	5층	1	22,425,200	437,974,800	-	460,400,000	10,000,000	36,040,000	46,040,000	46,040,000	46,040,000	46,040,000	46,040,000	46,040,000	138,120,000	
				6~7층	2	22,425,200	442,674,800	-	465,100,000	10,000,000	36,510,000	46,510,000	46,510,000	46,510,000	46,510,000	46,510,000	46,510,000	139,530,000	
				8~9층	2	22,425,200	447,374,800	-	469,800,000	10,000,000	36,980,000	46,980,000	46,980,000	46,980,000	46,980,000	46,980,000	46,980,000	140,940,000	
				10~14층	5	22,425,200	452,074,800	-	474,500,000	10,000,000	37,450,000	47,450,000	47,450,000	47,450,000	47,450,000	47,450,000	47,450,000	142,350,000	
				15~19층	5	22,425,200	456,774,800	-	479,200,000	10,000,000	37,920,000	47,920,000	47,920,000	47,920,000	47,920,000	47,920,000	47,920,000	143,760,000	
				20~24층	5	22,425,200	461,474,800	-	484,000,000	10,000,000	38,400,000	48,400,000	48,400,000	48,400,000	48,400,000	48,400,000	48,400,000	145,170,000	
				25~28층	4	22,425,200	466,174,800	-	488,700,000	10,000,000	38,870,000	48,870,000	48,870,000	48,870,000	48,870,000	48,870,000	48,870,000	146,580,000	
84.9948D	84D	24	102동 2호	5층	1	22,425,600	440,974,400	-	463,400,000	10,000,000	36,340,000	46,340,000	46,340,000	46,340,000	46,340,000	46,340,000	46,340,000	139,020,000	
				6~7층	2	22,425,600	445,674,400	-	468,100,000	10,000,000	36,810,000	46,810,000	46,810,000	46,810,000	46,810,000	46,810,000	46,810,000	140,430,000	
				8~9층	2	22,425,600	450,374,400	-	472,800,000	10,000,000	37,280,000	47,280,000	47,280,000	47,280,000	47,280,000	47,280,000	47,280,000	141,840,000	
				10~14층	5	22,425,600	455,074,400	-	477,500,000	10,000,000	37,750,000	47,750,000	47,750,000	47,750,000	47,750,000	47,750,000	47,750,000	143,250,000	
				15~19층	5	22,425,600	459,774,400	-	482,200,000	10,000,000	38,220,000	48,220,000	48,220,000	48,220,000	48,220,000	48,220,000	48,220,000	144,660,000	
				20~24층	5	22,425,600	464,474,400	-	486,900,000	10,000,000	38,690,000	48,690,000	48,690,000	48,690,000	48,690,000	48,690,000	48,690,000	146,070,000	
				25~28층	4	22,425,600	469,174,400	-	491,600,000	10,000,000	39,160,000	49,160,000	49,160,000	49,160,000	49,160,000	49,160,000	49,160,000	147,480,000	
129.4143	129	1	102동 2호	29층	1	46,449,100	834,137,182	83,413,718	964,000,000	10,000,000	86,400,000	96,400,000	96,400,000	96,400,000	96,400,000	96,400,000	289,200,000		
147.6731	147	1	102동 1호	29층	1	38,963,200	968,215,273	96,821,527	1,104,000,000	10,000,000	100,400,000	110,400,000	110,400,000	110,400,000	110,400,000	110,400,000	331,200,000		
176.0451	176	1	101동 1호	29층	1	34,145,700	1,168,958,455	116,895,845	1,320,000,000	10,000,000	122,000,000	132,000,000	132,000,000	132,000,000	132,000,000	132,000,000	396,000,000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0조에 의거 계약금, 중도금, 잔금으로 구분하였으며, 동 규정에 의거 중도금 납부 일자는 건축공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편집 및 인쇄과정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반드시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공통사항

- 본 아파트는 분양가상한제 미적용 주택으로 상기 주택형별 공급금액은 각 세대의 주택형별, 층별, 조망권별 등 다양한 조건을 사업주체 및 시공자가 적의 조정하여 책정한 금액입니다.
- 분양가격의 항목별 공시 내용은 사업에 실제 소요된 비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세대별 계약면적에는 계단실, 세대벽체면적 등의 주거공용면적과 관리실, 주민공동시설, 기계실, 전기실 등 그 밖의 공용면적이 포함되어 있으며, 기타 공용면적 등에 대한 금액이 상기 공급금액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 세대별 주택공급면적, 기타공용면적과 대지지분은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 절차, 실측정리 또는 소수점 이하 단수정리에 따라 계약면적과 등기면적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각 세대별 소수점 이하 면적 변동에 대해서는 공급금액을 상호 정산하지 않기로 하며 이에 대해 확인 후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공급금액에는 각 주택형별 공히 소유권이전등기비용, 취득세, 인지세 및 그 외 제세공과금이 미포함된 금액이며, 계약자 부담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 상기 공급금액에는 발코니 확장 비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상기 공급금액에는 추가 선택품목(가구, 가전 등 유상 옵션) 금액이 포함되지 아니한 금액이며, 추가 선택품목은 계약자가 선택하여 계약하는 사항으로, 별도의 계약을 통해 선택이 가능합니다.
- 근린생활시설(단지내 상가)은 상기 공급대상 및 공급금액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 상기 공급금액 납부일정은 사전에 계약자 본인이 확인하고 청약 및 계약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공급금액은 계약금, 중도금, 잔금의 순서로 납부하여야 하며, 잔금은 입주(열쇠 불출일) 전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분양대금 및 유상옵션 대금(중도금 및 잔금) 납부 시 은행 전산망 장애 등으로 오류가 발생하여 납부가 지연되는 경우라도 납부 지연에 따른 연체료가 산정될 수 있으므로 납부일 은행 업무 시간 내 납부를 권장합니다.
- 중도금, 잔금 납부일이 토·일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익일 은행 영업일을 기준으로 하고, 연체료 납부 시 토·일요일 또는 공휴일로 인해 납부가 지연되는 경우라도 납부 지연에 따른 연체일수로 산정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중도금은 해당 주택의 건축공정이 전체 공사비(부지매입비를 제외)의 50% 이상이 투입되고, 동별 건축공정이 30% 이상인 때를 기준으로 전후 각 2회 이상 분할하여 받으며, 상기 중도금 납부 기준 공정 시점 이후 중도금 납입일자는 예정 일자이고, 감리자의 건축공정 확인에 따라 추후 변동될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의 중도금 중 일부는 사업주체에서 지정한 대출 취급기관의 대출을 통해 납입할 수 있습니다.
- 잔금은 주택의 사용검사일을 기준으로 받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0조에 의거 납부할 수 있으며, 임시사용승인을 받아 입주하는 경우에는 전체 입주금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잔금을 입주일에 납부하고, 전체 입주금의 10%에 해당하는 입주 잔금은 사용검사일 기준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소유권보존등기는 공부정리절차 등의 이유로 실 입주일과 관계없이 다소 지연될 수 있습니다.)
- 대출 미신청자와 본인의 대출 부적격 사유로 인해 대출이 불가능한 경우 상기 납부 일정에 맞추어 직접 납부하여야 하며, 미납 시 연체료 부과됩니다.
- 본 아파트는 정부가 출자한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분양보증 받은 아파트이며, 분양계약자는 사업주체의 부도, 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체를 주택도시 보증 공사로 변경되는 것에 대해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사업주체가 장애에 주택도시보증공사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지정하는 자에게 주택 건설 사업 부지(지상 건축물을 포함한다.)를 신탁하는 경우 입주 예정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전산 검색 결과 당첨 사실, 이중 당첨 및 주택 소유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당첨 및 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므로 청약 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주택에 대한 신청 자격 등 판단 시 기준이 되는 면적은 주거전용면적이고, 연령 조건은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하며, 거주 지역은 주민등록표등본을 기준(주민등록표 등본상 말소 사실이 있는 경우 거주지역 및 거주기간은 재등록일 이후부터 산정)으로 합니다. 당첨자 중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는 본인의 책임과 비용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소명기간 이내 소명을 완료하여야만 계약 체결 및 계약체결 효력이 상실되지 않습니다.
- 본 아파트의 지번(공급 위치), 단지 명칭, 동 표시, 외관 색채, 부대시설, 문주, 조경시설을 등의 계획은 관계기관 심의 및 협의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의 분양조건은 분양시점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분양 및 판매조건은 소급해서 적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확인 후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 입주 시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관리비 선수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 분양가에 계산되지 않았거나, 변경되는 토지관련 조세는 추후 부과되는 실과세금액을 입주자 잔금 납부 시 납부하여야 합니다.

## II 일반공급 신청자격 및 당첨자 선정방법

■ **신청자격** : 입주자모집공고일(2024.02.16.) 현재 울진군에 거주하거나 대구광역시 및 경상북도 지역에 거주하는 만19세 이상인 자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부양) 중 입주자저축 순위별 자격요건을 갖춘 자(국내에서 거주하는 재외동포 재외국민 외국인적 동포 및 외국인 포함)를 대상으로 주택형별 청약순위 별로 청약 접수가 가능합니다.

구분	순위	주택형	청약관련 신청자격
민영주택	1순위	전용 60㎡ 초과 85㎡ 이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용면적 60㎡ 이하 : <b>가점제 (40%) 및 추첨제 (60%)</b> 적용, 가점제 낙첨자는 추첨제 대상자로 자동 전환됨.</li> <li>▪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요건이 아래의 1순위를 충족하는 자 (가점제 접수)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자</li> <li>②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납입하여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예치금액 이상인 자</li> <li>③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현재 납입인정 범위 내에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전일까지 각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으로 전환한 자</li> <li>④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납입금액이 각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예치금액 이상인 자</li> </ol> </li> </ul>
		전용 85㎡ 초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용면적 85㎡ 초과 : <b>추첨제 (100%)</b> 적용</li> <li>▪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요건이 아래의 1순위를 충족하는 자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자.</li> <li>②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현재 납입인정 범위 내에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전일까지 각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으로 전환한 자.</li> <li>③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납입금액이 각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예치금액 이상인 자</li> </ol> </li> </ul>
	2순위	전 주택형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예치금액과 상관없이 청약예·부금 및 주택청약종합저축(포함)에 가입한 자

### ■ 민영주택 청약 예치기준금액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2]

구분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 (울진군 및 기타 경상북도 포함)	그 밖의 광역시(대구광역시)	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전용면적 85㎡ 이하	200만원	250만원	300만원
전용면적 102㎡ 이하	300만원	400만원	600만원
전용면적 135㎡ 이하	400만원	700만원	1,000만원
모든면적	500만원	1,000만원	1,500만원

※ '지역'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의 주민등록표에 따른 거주지역을 말함.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9조 제3항 별표2 [민영주택의 청약 예치기준금액]에 따라 지역별, 주택규모별 예치금을 예치한 청약통장 가입자는 그 예치금 이하에 해당하는 면적의 주택에 대해 별도의 면적 변경 없이 청약 가능합니다.

※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주택규모선택 및 변경 절차 폐지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2016.12.30.)으로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의 주택규모선택 및 변경 절차가 폐지되었습니다.
- 주택규모선택 및 변경 절차 폐지에 따라 순위 산정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의 가입기간 및 예치금(잔액 기준)으로 순위를 산정합니다.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의 순위산정은 현행과 동일함)
- 예치금 잔액은 청약자가 청약 신청 당시 선택한 거주지(지역)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 청약 및 계약관련 유의사항 (경과기간 및 요건 등)

- 청약통장 가입은행의 “인터넷뱅킹 가입 및 공동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 네이버인증서, KB국민인증서, 토스인증서 및 신한인증서 ”를 신청접수일 이전에 미리 발급받아야 합니다.
-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청약관련 예금 가입자의 경우 해당구간의 예치금액을 충족하는 경우 해당 예치금액의 하위 면적 모두 청약 가능합니다.
- 청약신청가능 전용면적 변경요청
  - 청약예금(청약부금은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전용면적 85㎡ 이하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 납부한 분에 한함)에 가입하여 가입일(청약저축에서 청약예금으로 전환한 경우에는 전환일, 이미 신청가능 전용 면적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일)로부터 수시로 신청가능 전용면적 변경이 가능하며, 이 경우 예치금액은 현행 지역별 청약예금 예치금액으로 변경하여야 합니다.
- 신청가능 전용면적 변경신청 요건
  - 작은 주택규모로 변경한 분: 면적 변경 불필요(지역별 예치금액 이하의 주택에 대해서는 자유롭게 청약 가능)
  - 큰 주택규모로 변경한 분: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한 경우 신청 가능
  - 청약저축에서 청약예금으로 전환한 분: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한 경우 신청 가능
- 주택공급 신청서 상 단말기로 인자된 거주지역명을 주민등록표등본 상 거주지역과 반드시 대조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 신청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하여는 수정이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청약 신청 시 은행에서는 청약자의 청약자격에 대한 확인(검증) 없이 주택공급신청서에 기재한 내용만으로 청약접수를 받으므로 청약자는 본인의 청약자격(거주지역, 거주개시일, 무주택기간, 부양 가족수, 주택소유여부)등을 신청 전 확인하시어 청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택소유로 보지 않는 경우 등 주택소유관련 유의사항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 53조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선순위 청약접수결과 일반공급 세대수를 초과하더라도 예비입주자 선정비율(일반공급 세대수 500%)에 미달할 경우 차순위 점수를 받을 수 있으므로 청약신청 전 청약경쟁률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분양일정(당첨자발표일 기준)이 동일한 2개 이상의 주택에 대해서는 중복신청이 불가하며 1인 2건 이상 청약 시는 청약 모두 무효 처리합니다.
- 순위 내 청약 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후 계약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당첨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신청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주택공급신청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신청 취소나 정정은 할 수 없습니다.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서류의 결격 및 부정할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기타 관계법령에 위반될 시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일반적으로 해약 조치합니다.
- 청약을 위한 위장전입 등 부정청약당첨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주택법 제65조 및 제101조제3호)
- 국토교통부에서는 청약 자료를 토대로 주소이전 현황 등을 분석, 정기적으로 위장전입 의심자를 수사할 수 있습니다.

■ 청약 가정제 적용 안내

- 청약가정제에 의하여 동일순위(1순위)간에 경쟁이 있을 경우 위의 일정비율로 배분된 가정제 및 추첨제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 가정제 입주자 선정 방법: 가정점수의 산정기준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에 의한 높은 점수 순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 청약 가정제에서 탈락자는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자동으로 추첨대상자에 포함하여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 점수 입력은 청약자 책임(당첨자 결정 후에 당첨자의 청약 내용에 대한 정확성을 확인하여야 함)이며 청약자가 인터넷 청약내용을 잘못 입력하여 당첨자로 결정될 경우에는 부적격 당첨자에 해당됨으로 관련 증빙서류 등을 통해 청약 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한 후에 입력하여야 합니다

■ 청약 가정제 적용기준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의 1

구 분	내 용
①무주택기간 적용기준	1)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원 모두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합니다. 2) 소형·저가주택 등의 가격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산정합니다. 다만, 2007년 9월 1일 전에 주택을 처분한 경우에는 2007년 9월 1일 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6조 또는 제17조에 따라 공시된 가격을 말한다) 중 2007년 9월 1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에 따릅니다. 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후에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 : 입주자모집공고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나)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주택이 처분된 경우 : 처분일 이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중 처분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다) 분양권 등의 경우: 공급계약서의 공급가격(선택품목에 대한 가격은 제외한다) 3) 무주택기간은 주택공급신청자와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하고, 주택공급신청자의 연령이 만 30세가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하되, 만 30세가 되기 전에 혼인한 경우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혼인관계증명서에 혼인신고일로 등재된 날부터 무주택기간을 기산합니다. 이 경우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2회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을 말한다)부터 무주택기간을 산정합니다.



<p>②부양가족의 인정 적용기준</p>	<p>1) 부양가족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세대원으로 합니다.  2)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은 주택공급신청자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원인 경우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 이상 계속하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봅니다. 다만,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모두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으며,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는 직계존속도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 외국인 직계존속  - 내국인 직계존속이라도 요양시설(「주민등록법」 제12조에 따라 주민등록을 하는 노인요양시설을 말함) 및 해외에 체류 중(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인 경우  ※ 2019.11.01. 개정·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에 따라 부양가족을 산정 시에는 제53조제6호를 적용하지 않으므로 만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3) 자녀(부모가 모두 사망한 손자녀 포함)는 미혼으로 한정합니다.  - 주택공급신청자의 만30세 이상인 직계비속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본다.  - 재혼배우자의 자녀는 주택공급신청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본다.  4) 결혼 후 이혼한 자녀는 "이혼인 자녀"로 보지 않으며, 외국인인 직계비속과 아래의 경우처럼 해외 체류 중인 직계비속도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 (만 30세 미만)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현재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  - (만 30세 이상)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p>
<p>③입주자저축 가입기간</p>	<p>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 명의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을 기준으로 가입기간을 산정합니다.</p>
<p>④주택소유여부 및 무주택기간 산정기준</p>	<p>①무주택기간 적용기준 및 ②부양가족의 인정 적용기준에 따라 주택소유 여부를 판정하거나 무주택기간을 산정하려는 경우에는 제23조제4항 및 제53조에 따른다.</p>

■ 청약 가정제 산정기준표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의 2 나목

가점항목	가점상한	가점구분	점수	가점구분	점수	확인할 서류 등
①무주택기간	32	만30세 미만 미혼자 또는 유주택자	0	8년 이상 ~ 9년 미만	18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민등록표등본 (배우자 분리세대 시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제출)</li> <li>■ 등기사항전부증명서(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등본 등</li> <li>■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 만 30세 이전에 결혼한 경우 혼인신고일 확인</li> </ul>
		1년 미만	2	9년 이상 ~ 10년 미만	20	
		1년 이상 ~ 2년 미만	4	10년 이상 ~ 11년 미만	22	
		2년 이상 ~ 3년 미만	6	11년 이상 ~ 12년 미만	24	
		3년 이상 ~ 4년 미만	8	12년 이상 ~ 13년 미만	26	
		4년 이상 ~ 5년 미만	10	13년 이상 ~ 14년 미만	28	
		5년 이상 ~ 6년 미만	12	14년 이상 ~ 15년 미만	30	
		6년 이상 ~ 7년 미만	14	15년 이상	32	
②부양가족수	35	0명	5	4명	2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민등록표등·초본</li> <li>■ 가족관계증명서 ※ 청약신청자 본인은 부양가족수에서 제외</li> <li>■ 만 18세 이상 성년자녀 부양가족인정 신청 시 추가확인서류 (1) 만 18세 이상 ~ 만30세 미만 : 자녀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2) 만 30세 이상 : 자녀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li> </ul>
		1명	10	5명	30	
		2명	15	6명 이상	35	
		3명	20			
③입주자저축 가입기간	17	6개월 미만	1	8년 이상 ~ 9년 미만	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약통장 (인터넷 청약 시에 자동 계산됨)</li> </ul>
		6개월 이상 ~ 1년 미만	2	9년 이상 ~ 10년 미만	11	
		1년 이상 ~ 2년 미만	3	10년 이상 ~ 11년 미만	12	
		2년 이상 ~ 3년 미만	4	11년 이상 ~ 12년 미만	13	
		3년 이상 ~ 4년 미만	5	12년 이상 ~ 13년 미만	14	
		4년 이상 ~ 5년 미만	6	13년 이상 ~ 14년 미만	15	
		5년 이상 ~ 6년 미만	7	14년 이상 ~ 15년 미만	16	
		6년 이상 ~ 7년 미만	8	15년 이상	17	
		7년 이상 ~ 8년 미만	9			

※ 본인 청약가점 점수 = ① + ② + ③

※ 제28조제6항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과거 2년 이내에 가정제를 적용받아 다른 주택의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는 제1순위에서 가정제의 적용 대상자에서 제외되며, 추첨제의 적용 대상자에 포함됩니다.

■ 청약신청 유의사항

- 주민등록표초본상 말소 사실이 있는 경우 해당 시·도거주기간은 재등록일 이후부터 산정합니다.
- 신청자격 및 요건 등의 기준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이며 면적은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합니다.
- 청약신청 접수는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에 대하여 중복신청이 불가(1인 1건만 신청 가능)하며, 1인 2건 이상 신청할 경우에는 청약 모두를 무효 처리합니다.
- 본 주택에 신청하여 당첨될 경우 당첨자로 전산관리 되며, 당첨자 및 세대에 속한 자는 당첨일로부터 향후 5년간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1순위 청약접수가 제한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접수일자와 관계없이 당첨자발표일이 우선인 주택에 당첨이 되면 당첨자 발표일이 늦은 주택의 당첨은 자동 취소됩니다.(각각 동일한 청약통장으로 당첨된 경우에 한함)
- 상기 주택에 신청하여 당첨된 청약통장은 계약체결 여부와 상관없이 재사용이 불가하며 당첨자로 전산 관리되므로 향후 다른 주택 청약 시 제한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단 부적격당첨자가 소명기간 내에 해당 공급자격 또는 선정 순위가 정당함을 소명하지 못하여 당첨이 취소된 자는 당첨일로부터 수도권 및 투기 청약과열지역은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촉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민간 사전청약 및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음]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일방적으로 해약조치하며 관계법령에 의거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청약예금 가입한 후 예치금액이 작은 지역에서 큰 지역으로 주거를 이전한 분은 신청일 현재 변경된 주거지역에 해당하는 청약예금 예치금액으로 증액하여 청약이 가능합니다. 단 차액을 감액하는 경우 또는 주거지 변경없이 가입한 지역에서 거주하면서 청약 신청할 경우에는 지역간 예치금액 변경없이 청약 가능합니다)
- 청약통장 관련 기준사항
  - ① 청약저축에서 청약예금으로 전환 기준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 시 청약 신청 가능합니다.
  - ② 청약예금 지역간 예치금액 차액 충족 기준 : 청약 접수 당일까지 충족 시 청약 신청 가능합니다.
  - ③ 청약통장 예치금 기준(주택청약종합저축)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당일까지 예치금 충족 시 청약 신청 가능합니다.
  - ④ 청약예금의 신청 가능 주택규모(전용면적 기준) 변경한 분 신청 요건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한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단, 작은 주택규모로 변경할 경우 해당구간의 청약예치금액 충족 시 별도의 주택규모 변경 절차 없이 하위 면적 모두 청약 가능함)
- 인터넷 청약 절차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청약 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운영하는 “청약가상체험”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III 신청일정 및 장소, 구비서류

#### ■ 신청일정 및 장소

구분	신청대상자	신청일시	신청방법	신청장소
일반공급	1순위	2024년 02월 26일(월) 09:00~17:30	• 인터넷 청약 (PC 또는 스마트폰)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앱 • 청약통장 가입은행 창구
	2순위	2024년 02월 27일(화) 09:00~17:30		

#### ※ 스마트폰앱 : 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 스마트폰앱을 이용하여 청약할 경우에는 청약일 상당 기간 전에 앱을 설치하고 청약 시 사용할 공동인증서를 청약홈 앱으로 미리 저장하시거나, 금융인증서, 네이버인증서, KB국민인증서, 토스인증서 및 신한인증서를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청약 당일 인증서 설치 문제로 청약이 곤란할 경우에는 PC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일반공급의 경우 인터넷 청약이 원칙이나 정보취약계층(고령자, 장애인 등) 등에 한하여 청약통장 가입은행 본·지점에서 청약이 가능합니다.(창구 접수시간 : 09:00~16:00. 단, 은행 영업점별 업무 시간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신 후 방문하시기 바람)

#### ※ 청약 신청한 주택의 신청취소는 신청 당일 청약신청 마감 이전까지 가능하며, 청약 접수 종료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신청 취소 및 변경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일반공급 청약 시 가점항목 등 청약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 기재사항만으로 청약신청을 받으며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체결 시 주민등록표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주택공급 신청내용과 청약자격을 대조한 후 청약신청 내용과 청약자격이 일치할 경우에 계약체결이 가능하므로 청약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인터넷 청약서비스 이용방법 및 절차 안내(해당순위 청약신청일 09:00~17:30)

※ 한국부동산원에서 운영하는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청약 신청자의 편의를 위하여 인터넷 청약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현재 해당 청약순위가 발생하신 분은 ①청약통장 가입은행 및 취급은행을 방문하여 인터넷뱅킹 가입 및 공동인증서를 신청접수일 이전에 미리 발급받거나, ②금융인증서, ③네이버인증서, ④KB국민인증서 ⑤토스인증서 또는 신한인증서를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한국부동산원(모든 은행의 청약통장 가입자) - 일반공급 1, 2순위

[PC 청약시]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접속 → 인증서를 통한 로그인 → 「청약신청」 → 「APT청약신청」 → 청약자격 등 입력 → 청약 완료

[스마트폰 청약시] 스마트폰앱(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접속 → 인증서를 통한 로그인 → 「청약신청」 → 「APT청약신청」 → 청약자격 등 입력 → 청약 완료

인터넷 청약 절차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운영하는 “공고단지 청약연습”과 “청약가상체험”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청약홈에서는 청약자의 편의제공을 위하여 아래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더라도 청약에 제한은 없습니다.

① [마이데이터 청약도움e 서비스] 청약신청 단계에서 본인정보 제3자 제공 요구시 주민등록표등·초본 등 행정정보를 해당기관으로부터 열람하여 그 정보를 즉시 보여줌으로써, 청약에 필요한 여러 가지 자격을 판단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선택사항이며, 청약신청 당일 지자체 통신망 연결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서비스 제공되지 않을 수 있음)

· 「청약신청」 → 「APT청약신청」 → 「Step2. 주택형선택 및 행정정보 자동조회」 → 「서비스 이용 동의 시」. 단, 미동의 시 기존과 동일한 절차대로 신청자가 직접 해당 자격을 판단하여 입력 가능

② [공고단지 청약연습(민영주택)] 공고일 다음날부터 일반공급 청약신청 전날까지 세대원을 등록하고, 해당 세대원(성년자에 한함)의 개인정보 동의가 완료되면, 실제 청약하고자 하는 모집공고에 대한 신청자 및 세대원의 청약자격(주택소유 및 각종 청약제한사실)을 미리 알아볼 수 있어, 부적격자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지원합니다.

· 세대원 등록방법 : 「청약자격확인」 → 「세대구성원 등록/조회」 및 「세대구성원 동의」

· 청약연습방법 : 「공고단지 청약연습」 → 「공고단지 청약연습 신청」. 단, 세대구성원 등록 생략 시 신청자 본인에 대해서만 청약자격 검증

※ 상기 접수시간(17:30)은 청약접수 완료 기준으로 청약 신청 진행 중이라도 접수 완료하지 않고 17:30이 경과하면 청약신청이 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 신청 시 해당 은행에서는 청약자격에 대한 확인(검증)없이 청약 신청자가 기재한 사항만으로 청약접수를 받으며, 청약자가 인터넷 청약내용을 잘못 입력하여 당첨자로 결정될 경우에도 부적격 당첨자에 해당되므로 관련 증빙서류 등을 통해 청약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한 후에 입력해야 합니다.

■ 고령자, 장애인 등 은행창구 청약(일반공급은 인터넷 청약 신청이 원칙이며 정보취약계층(고령자 및 장애인 등) 등을 제외하고는 은행창구에서의 청약접수는 불가함)

구 분	구비사항			
일반 공급	본인 신청 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택공급신청서(청약통장 가입은행 비치)</li> <li>·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예·부금 포함) 통장</li> <li>· 예금인장 또는 본인 서명</li> </ul>		
	제3자 대리신청 시 추가사항 (배우자 포함)	·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 신청자(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포함)로 간주하며, 상기 구비사항 외에 다음의 서류를 추가로 구비해야 함		
		<table border="1"> <thead> <tr> <th>인감증명 방식</th> <th>본인서명확인 방식</th> </tr> </thead> <tbody> <tr>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약자의 인감증명서 1통(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 단, 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의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li> <li>- 청약자의 인감도장(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인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시는 제출 생략)</li> <li>- 청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1통(신청 접수장소 비치)</li> <li>-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또는 영주증을 말함)</li> <li>※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li> </ul> </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약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본인서명사실확인서' 상의 서명) 1통</li> <li>- 청약자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통</li> <li>-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또는 영주증을 말함)</li> <li>※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li> </ul> </td> </tr> </tbody> </table>	인감증명 방식	본인서명확인 방식
인감증명 방식	본인서명확인 방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약자의 인감증명서 1통(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 단, 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의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li> <li>- 청약자의 인감도장(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인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시는 제출 생략)</li> <li>- 청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1통(신청 접수장소 비치)</li> <li>-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또는 영주증을 말함)</li> <li>※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약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본인서명사실확인서' 상의 서명) 1통</li> <li>- 청약자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통</li> <li>-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또는 영주증을 말함)</li> <li>※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li> </ul>			

※ 상기 제출 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또는 청약자격 전산등록 기준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상기 구비사항이 완비되었을 경우에 한하여 접수합니다.(단, 변경이 있을 경우 변경서류 제출)

※ 주민등록표등·초본 발급 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 기산일 산정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청약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이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에게 있습니다.

※ 주택공급 신청서의 단말기 「(전산)인자란」의 인자란 내용과 주택공급신청내용을 확인하여 주시고, 동 내용이 상이한 경우에는 당일 내로 공급신청서를 접수한 영업점에 정정 신청을 해야 합니다.

※ 본인 및 배우자가 인장 날인 없이 신청인[서명]으로 주택공급신청서를 작성한 경우는 신청자 성명을 인지할 수 있어야 하며, 주택공급신청서의 [서명]은 접수받은 직원 입회하에 신청인이 직접 기재해야 합니다.

## IV 당첨자 발표

### ■ 일정 및 계약장소

구분	신청대상자	당첨자 및 동·호수/예비입주자 및 예비순번 발표	계약체결
일반공급	1순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시 : 2024년 03월 05일(화)</li> <li>• 확인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a href="http://www.applyhome.co.kr">www.applyhome.co.kr</a>)</li> <li>또는 스마트폰앱에서 개별조회</li> <li>*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네이버인증서, KB국민인증서, 토스인증서 또는 신한인증서로 로그인 후 조회 가능</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24년 03월 18일(월) ~ 2024년 03월 20일(수)</li> <li>(방문계약 방법 별도 안내)</li> </ul> </li> <li>• 장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당사 견본주택</li> <li>(장소 : 경상북도 울진군 삼율리 318-7)</li> </ul> </li> </ul>
	2순위		

※ 당첨자 명단은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http://www.applyhome.co.kr))에서 본인이 직접 확인하셔야 하며 당첨자 및 동·호수 확인 시에는 인증서 로그인 후 조회 가능함을 알려드리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다만, 고령자 및 장애인 등 정보취약계층으로서 인터넷 청약이 불가하여 은행창구(일반공급) 등에 방문하여 청약신청한 경우에 한하여 정보입력(주택명, 주택형, 성명, 생년월일 입력) 조회가 가능하나 정보 오입력 등의 경우 부정확한 내역이 조회될 수 있으므로 인증서를 발급받으신 분은 반드시 인증서로 로그인하여 정확한 당첨내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청약신청 건에 대해서는 '정보입력'에 의한 당첨내역 조회가 불가(당첨여부에 관계없이 '당첨내역이 없음'으로 표기됨)하오니 반드시 인증서로 로그인하시어 당첨내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 및 동·호수, 예비입주자 및 예비순번 발표 시 본인이 직접 확인해야 하며, 개별서면 통지는 하지 않습니다.(전화문의는 착오 가능성 때문에 응답하지 않으니 이 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의 계약기간은 주택소유실태 및 과거 당첨사실 유무 전산검색 소요기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당첨자에 대한 주택소유실태 전산검색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 등 적격자(정당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부적격자는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적격자로 재확인 후 계약을 체결합니다.

※ 당첨 이후 주소 및 연락처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변경내용을 사업주체에게 서면 통보하시기 바라며, 미통보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 인터넷, 휴대폰 문자 당첨자발표 서비스 이용 안내

- 본 서비스는 청약신청자의 편의를 위해 제공하는 부가서비스이며 정확한 당첨여부는 당사 홈페이지([www.oceanthecastle.com](http://www.oceanthecastle.com))를 통해 재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숲 은행 청약자)
이용기간		2024년 03월 05일(화) ~ 2024년 03월 14일(목) (10일간)
인터넷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a href="http://www.applyhome.co.kr">www.applyhome.co.kr</a>) 접속 → 청약당첨조회 → 당첨조회(최근10일)</li> <li>- 스마트폰앱 접속 → 청약당첨조회 → 당첨조회(10일간)</li> <li>※ 당첨조회(10일) 기간이 경과한 뒤에도 마이페이지 &gt; 청약제한사항확인 또는 청약소통방 &gt; APT당첨사실조회를 통해 당첨내역 확인 가능</li> </ul>
휴대폰 문자서비스	대상	일반공급 청약 신청시 휴대폰번호를 등록하신 분 중 당첨(예비)자
	제공일시	2024년 03월 05일(화) 08:00 (제공시간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휴대폰 문자서비스는 청약신청자의 편의도모를 위한 부가서비스로서 정확한 당첨여부는 상기 발표일에 청약홈>청약당첨조회 및 당첨자 발표장소 등에서 본인이 반드시 재확인하셔야 합니다.

### ■ 입주자 선정 방법 및 동·호수 결정

구분	선정 방법
일반공급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국부동산원 컴퓨터 입주자 선정 프로그램에 의해 각 순위별로 청약통장 가입은행 구분 없이 1순위는 전용면적대별 가점제 및 추첨제 적용비율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2순위는 추첨제로 입주자를 선정하며, 동·호수 추첨은 무작위로 동·호수를 결정합니다.</li> <li>• 전용면적대별 가점제 및 추첨제 적용비율은 다음과 같으며, 가점제가 적용되는 전용면적의 1순위 청약자는 해당 순위에서 가점제(가점점수가 높은 순)로 입주자를 선정하고, 가점제 낙첨자에 한해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추첨제 대상으로 전환하여 입주자를 재선정합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용면적 60㎡ 초과 85㎡ 이하 : 일반공급 세대수의 40%를 가점제로, 나머지 60%는 경쟁이 있을 경우 추첨제 적용</li> <li>- 전용면적 85㎡ 초과 : 일반공급 세대수의 100%를 추첨제로 공급하되, 경쟁이 있을 경우 추첨제 적용</li> </ul> </li> <li>• 동일순위 신청자(가점제 및 추첨제 대상 모두 포함) 중 경쟁이 있을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울진군 거주 신청자가 기타 지역(기타 경상북도, 대구광역시) 거주 신청자보다 우선합니다.</li> <li>• 입주자 선정 시 선순위 신청자(가점제 및 추첨제 대상 모두 포함)가 일반공급 세대수의 600%를 초과할 경우 차순위 점수분은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19.12.06.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에 의거 일반공급 예비입주자는 청약신청자가 예비입주자 선정 총수에 미달되어도 가점이 높은 순으로 예비순번을 부여합니다.</li> <li>• 예비입주자 선정 시 주택형태로 일반공급 세대수의 500%를 아래와 같이 선정합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순위 : 일반공급 세대수의 500%까지 지역우선공급을 적용하여 가점이 높은 자를 앞 순번으로 선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점제가 적용되지 않는 주택인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li> </ul> </li> <li>- 2순위 : 1순위에서 미달된 예비공급세대수 만큼 지역우선공급을 적용하여 추첨으로 선정</li> </ul> </li> <li>• 미계약 또는 계약해제 발생 시 예비입주자 순번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당첨 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과 해당 주택의 동·호수를 공개한 후 동·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에 참가의사를 표시한 예비입주자에 대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합니다.(동·호수를 최초로 배정받은 예비입주자는 계약여부와 상관없이 당첨자로 관리되며 예비입주자 명단 및 순번은 당첨자명단 발표 시 함께 발표됨)</li> </ul>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터넷 청약(한국부동산원 청약home)의 경우 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당첨자 공급계약 체결 전 사업주체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li> <li>• 청약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 접수가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에게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li> <li>• 주택소유여부의 판단에 있어 공급신청 당시 입력 값(자료)으로 우선 입주자선정을 하고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결과에 따른 세대주 및 세대원의 주택소유 여부에 따라 부적격 통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li> <li>• 분양일정상 계약일 이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에는 아파트 당첨 및 계약이 임의 해지될 수 있으며, 계약금 납입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지급이자 없이 원금만 환불하며, 당첨 취소세대는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합니다.</li> <li>•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7조제8항에 따라 부적격통보를 받고,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상의 기간에 소명하지 못할 경우 당첨 취소 및 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며, 부적격 당첨자로 판명된 경우 <b>항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당첨자발표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촉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민간 사 전 청약 및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b></li> </ul>

#### ■ 예비입주자 유의사항 및 공급 방법

- 예비입주자에 대한 공급일정은 별도로 통보할 예정입니다.
- 사업주체는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에게 업무진행(예비입주자 추첨일정 등) 안내와 관련하여, 청약시 등록한 연락처(전화, 주소 등)를 기준으로 안내드리오니 변동이 있으신 예비입주자께서는 사업주체에게 본인의 연락처(주소, 전화번호)를 통보하여야 합니다. 또한 통보 또는 연락받지 못한(부재, 번호오류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불이익은 예비입주자의 책임이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예비 입주자로 선정된 자는 지정된 서류제출기간에 부적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부적격으로 판정시 예비입주자 동·호수 배정에 참여하실수 없습니다.
- 예비입주자 및 예비순번은 최초 공급계약 체결일로부터 180일까지(예비입주자 소진될 경우에는 그 때까지로 함.) 공개합니다.
-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다른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여 당첨자로 선정된 경우 본 아파트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으며, 동·호수 배정을 위한 추첨에도 참가할 수 없습니다.[예비입주자의 동·호수 배정일(당첨일)이 공급 신청한 다른 주택의 당첨자발표일보다 빠를 경우 다른 주택의 당첨이 무효 처리됨.] 또한 추첨에 참가하여 계약을 체결한 후라도 다른 주택 당첨자로 선정된 경우 계약이 해제될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정당 당첨자의 계약사항, 부적격 세대 발생 및 소명여부에 따라 일부 또는 전 주택형의 예비입주자의 공급이 없을 수 있으며, 입주자로 선정된 자 중 당첨이 취소되거나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 또는 공급계약을 해약한 자가 있으면 소명기간이 지난 후 예비입주자에게 순번에 따라 공급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 당첨 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과 해당 주택의 동·호수를 공개한 후 동·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의 참가의사를 표시한 예비입주자에 대하여는 일반공급 물량을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하여 공급합니다.(미 방문시 예비입주자 추첨 참가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함.)
- 예비입주자 중에서 최초 동·호수 배정 추첨에 참가하여 당첨된 예비입주자는 공급 계약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당첨자로 관리되어 청약통장 재사용이 불가하고 과거 5년내 당첨사실 등이 적용됩니다.

### V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자격 확인 서류 제출

#### ■ 당첨자 자격검증서류 제출 일정 및 장소

구분	기간	비고
당첨자 서류 접수 기간	2024년 03월 09일(토) ~ 2024년 03월 13일(수) (서류제출 방법 별도 안내)	건본주택(경북 울진군 후포면 삼울리 318-7)

- ※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에 대하여 제출 서류를 접수하며, 아래의 모든 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한합니다.
- ※ 직인날인이 없거나 또는 직인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에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 ※ 예비입주자의 당첨자격 검증 및 서류제출 일정은 추후 통보할 예정입니다.

■ 일반공급 당첨자(예비입주자 포함) 자격검증 서류 안내(공통서류와 당첨 유형별 필수 서류 및 해당 추가서류 포함 제출)

- 모든 서류는 “상세”로 발급해야 합니다.(과거 전입사항 / 세대주와의 관계 / 주소변동 내역 / 세대원 성명 및 주민번호 뒷자리 포함 등)

구분	서류유형		해당서류	발급기준	확인 및 유의사항
	필수	추가 (해당자)			
공통서류	○		서약서	본인	· 견본주택에 비치
	○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본인	· 본인발급용(용도 : 당첨자 자격확인 및 공급계약 체결용) (단,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제3자 대리신청 불가)
	○		신분증	본인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		주민등록표등본(전체 포함)	본인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세대원 포함), 주소변동사항 및 변동사유,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
	○		주민등록표초본(전체 포함)	본인	· 성명,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주소변동사항 및 변동사유, 발생일(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본인	·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본인	·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본인	· 기록대조일은 본인 생년월일 ~ 입주자모집공고일로 설정하여 발급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표시
		○	주민등록표등본(전체 포함)	배우자	· 주민등록표상 배우자가 분리된 경우 제출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세대원 포함), 주소변동사항 및 변동사유,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
		○	복무확인서	본인	· 10년이상 장기복무군인이 입주자저축에 가입하고 거주하는 지역과 다른 주택건설지역의 주택을 공급 받으려는 경우 ※ 군 복무기간(10년 이상)명시
	○	해외체류(단신부임)관련 입증서류	해외체류 증빙서류	본인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제8항에 의거 당첨자(청약신청자)가 생업에 종사하기 위하여 직접 (본인만)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 생업종사 중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국내기업 및 기관소속 해외 주재원 및 출장자 : 파견 및 출장명령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재직증명서 - 해외 취업자 및 사업체 운영자 : 현지관공서에서 발급받은 사업 또는 근로 관련 서류, 취업 또는 사업비자 발급내역 등 - 근로자가 아닌 경우 : ① 비자 발급내역, ② 계약서 또는 근로계약서 등 ※ 해외에서 발급받은 서류의 경우 번역공증 첨부 ※ 유학, 연수(근로 및 파견 목적의 연수 제외), 관광, 단순체류자의 경우 생업사정을 인정할 수 없으며, 생업관련 증빙서류 제출이 불가능한 자 또한 생업사정 불인정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세대원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표시, 기록대조일은 세대원 생년월일 ~ 입주자모집공고일로 설정하여 발급 ※ 당첨자(청약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를 구성하지 않은 미성년 자녀 포함 발급
일반공급	○		가정산정기준표	-	· 당사 견본주택에 비치(가정제 당첨자인 경우)
	○		주민등록표초본(전체 포함)	직계존속	·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한 사실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성명,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주소변동사항 및 변동사유, 발생일(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직계존속	· 직계존속을 부양가족으로 산정한 경우 관계 확인 및 피부양 직계존속의 배우자 확인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포함) 전부 공개 “상세”로 발급)
	○		주민등록표초본(전체 포함)	직계비속	· 만30세 이상 미혼의 직계비속을 과거 1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한 사실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성명,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주소변동사항 및 변동사유, 발생일(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직계비속	· 만 18세 이상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포함) 전부 공개 “상세”로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배우자	·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청약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되어있거나, 분리된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되어 있을 경우 · 재혼가정의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신청 한 경우(신청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한 경우에 한함)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포함) 전부 공개 “상세”로 발급)

		○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상세)	부양가족으로 산정한 직계존·비속	· 직계존·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직계존속 부양가족 제외 사항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에는 부양가족에서 제외 - 직계비속 부양가족 제외 사항 * 30세 미만 : 입주자모집공고 기준 현재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 * 30세 이상 : 입주자모집공고 기준 최근 1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 · 기록대조일을 해당 부양가족의 생년월일~입주자모집공고일로 출입국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
제3자 대리인 신청 시 추가서류	○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당첨자	· 본인발급용(용도 : 당첨자 자격확인 위임용) (단,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제3자 대리신청 불가)
	○		위임장	당첨자	· 청약자의 인감도장 날인, 당사 견본주택에 비치
	○		신분증, 인장	대리인	· 당첨자 본인 외에는 모두 제3자로 간주함(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포함)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부적격 통보를 받은 자	○		해당 주택에 대한 소명 자료	해당 주택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건축물대장등본, 무허가건물확인서, 건축물철거명실신고서 등 · 기타 무주택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		사업주체가 요구하여 인정하는 서류	해당 주택	· 해당 기관의 당첨사실 무효확인서 등

※ 상기 모든 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상기 구비 사항이 완비된 경우에 한하여 접수 가능합니다.

※ 신청자의 착오로 인하여 잘못 접수된 청약신청분의 당첨으로 인한 당첨취소 및 부적격 결과는 신청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주민등록표등·초본 발급시 신청자의 별도 요청이 없는 경우 “주민등록번호”, “세대주 성명 및 관계”, “주소변동이력”을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반드시 “주민등록번호”, “세대주 성명 및 관계”, “주소변동이력”이 표기되도록 요청하여 발급 받으시기 바람.

- 주민등록표등본 발급시 기재(포함)되어야 할 내용 : 세대구성 사유, 현 세대원의 세대주와의 관계, 현 세대원의 전입일/변동일/변동사유, 세대구성원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및 성명
- 주민등록표초본 발급시 기재(포함)되어야 할 내용 : 개인 인적사항 변경내용, 과거의 주소변동사항(전체포함), 과거의 주소변동사항 중 세대주의 성명과 세대주와의 관계

※ 일반공급 청약 시 가정항목 등 청약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 기재사항만으로 청약신청을 받으며 당첨자에 한하여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주택공급 신청내용과 청약자격을 대조한 후 청약신청 내용과 청약자격이 일치할 경우에 계약체결이 가능하므로 청약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신청자(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포함)로 간주합니다.

※ 신청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상기 서류 외 당첨자격 확인을 위하여 사업주체에서 추가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미제출 시 자격확인 불가로 계약체결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 ■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제4항 및 제53조

<p>■ 검색대상 : 주택공급신청자와 그 세대원 전원</p> <p>■ 주택의 범위 : 건물등기사항 증명서, 건축물관리대장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공유지분으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와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분양권 등</p> <p>■ 주택처분 기준일(제1호와 제2호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에는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p> <p>1.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 등기접수일</p> <p>2. 건축물대장등본 : 처리일</p> <p>2의2. 분양권 등에 관한 계약서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된 공급계약체결일</p> <p>2의3. 제2조제7호다목에 따른 분양권 등의 매매계약서</p> <p>가. 분양권 등의 매매 후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된 경우에는 신고서상 매매대금 완납일</p> <p>나. 분양권 등을 증여나 그 밖의 사유로 처분한 경우 사업주체와의 계약서상 명의변경일</p> <p>3. 그밖에 주택소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p> <p>■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봄</p> <p>1. 상속으로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라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p> <p>2.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한다)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p> <p>가.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p> <p>나. 85제곱미터 이하의 단독주택</p> <p>다.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p> <p>3.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p>
---

4. 세무서에 사업자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 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5. 주택공급신청자가 속한 세대가 2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1호 또는 1세대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
6.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이 주택 또는 분양권 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가점제의 부양가족 인정 여부 판단시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주택 또는 분양권 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모두 부양가족에서 제외함.
7.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8. 무허가건물[중전의 「건축법」(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한 건물을 말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이 경우 소유자는 해당 건물이 건축 당시의 법령에 따른 적법한 건물임을 증명해야 한다.
9. 주택공급신청자가 소형·저가주택 등을 1호 또는 1세대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
10. 제27조 제5항 및 제28조 제10항제 1호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을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아 분양권 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해당 분양권 등을 매수한 사람은 제외한다)
11. 임차인으로서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받지 못한 사람이 임차주택을 경매 또는 공매로 매수하여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그 주택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가. 주택가격이 1억5천만원(수도권은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이 경우 주택가격의 산정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 제1호가목2)를 준용한다.
  - 나.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 ■ 부적격 당첨자에 대한 명단관리

- 사업주체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 제3항 및 제57조 제8항에 따른 부적격 당첨자가 소명기간에 해당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가 정당함을 소명하지 못하고 규칙 제58조 제4항에도 해당하지 못하여 당첨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7일 이내에 그 명단을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7조 제7항에 따라 사업주체에게 전산검색결과를 통보할 때 규칙 제58조 제3항에 해당하는지를 표시하여 통보하여야 하며,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은 제58조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자의 명단을 당첨자 명단에서 삭제하는 등 전산관리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 제1항에 따라 당첨이 취소된 자는 공급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당첨일부터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지역에서 해당 호에서 정한 기간동안 다른 분양주택(민간사전청약주택 및 분양 전환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1. 수도권 : 1년
  2. 수도권 외의 지역 : 6개월(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은 1년)
  3. 제1호 및 제2호의 지역 중 위축지역 3개월
- 사업주체는 부적격 당첨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규칙 제58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당첨자로 봅니다. 다만, 규칙 제57조 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1. 같은 순위(「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에 따른 순위를 말함)에서 경쟁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순위의 자격을 갖춘 자
  2. 같은 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규칙 제52조 제3항에 따른 소명기간에 재산정한 가점제 점수(가점제를 적용하여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 또는 공급 순차별 자격(순차별로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이 해당 순위의 당첨자로 선정되기 위한 가점제 점수 또는 자격 이상에 해당하는 자(재산점 점수보다 같거나 낮은 경우에는 제외)

※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및 제출서류 확인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를 달리한 부적격자로 판정된 자에 대해서는 그 결과를 즉시 통보하며, 통보한 날로부터 7일 내에 부적격 사항에 대한 소명 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기한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합니다.

※ 부적격 당첨자로 입증될 경우 “계좌부활요청서(건본주택 비치)”를 작성하여야만 청약통장 재사용이 가능합니다.

## VI

### 계약일정

#### ■ 계약 체결 일정 및 장소

- 당첨자는 당첨 동·호수의 공급대금 확인 후 지정된 분양대금 계좌로 계약금을 납부하고 필수 구비서류와 해당 추가 구비서류를 준비하시어 반드시 지정된 계약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구 분	계약 기간	계약 장소
당첨자 계약 체결	2024년 03월 18일(월) ~ 2024년 03월 20일(수) (방문계약 방법 별도 안내)	울진후포 오션더캐슬 건본주택 (경상북도 울진군 후포면 삼율리 318-7)

※ 당첨자의 계약기간은 주택소유실태 및 과거 당첨사실 유무 전산검색 소요기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당첨자에 대한 주택소유실태 전산검색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 등 적격(정당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부적격자는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적격자로 재확인 후 계약을 체결합니다.(부적격자는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토록



- 통보받은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일정기간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당첨된 주택은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함)
- ※ 계약체결 이후라도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하지 못하면 계약은 취소됩니다.
- ※ 지정 계약기간 내에 계약금 전부 또는 일부 금액을 납부하더라도 정당당첨자 계약기간 내 계약 미체결 시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 당첨자 계약 체결 일정 및 방법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될 경우 추후 별도 안내할 예정입니다.
- ※ 작오 납입에 따른 문제 발생 시 사업주체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 ※ 당첨 및 계약 체결 후라도 서류의 결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및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반될 시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일방적으로 해약 조치합니다.

**■ 계약시 구비사항**

- ※ 당첨자 서류 제출 기간 내에 서류를 제출한 당첨자분께서는 계약기간 내 아래의 구비서류를 구비하여 계약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부적격 당첨자로 소명자료 제출이 필요하신 분은 구비서류와 같이 소명자료 제출)
- ※ 계약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한하며, 계약 시 구비서류 중 1건이라도 구비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구분	구비사항
본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계약금 입금증</li> <li>• 계약자의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li> <li>•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본인발급용 / 용도 : 아파트 계약용)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자의 경우 제3자 대리계약 진행 불가</li> <li>• 자금조달계획서(분양가 6억 이상 세대에 한함)</li> <li>•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사실신고증(또는 국내거주사실증명서 1통) /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1통)</li> </ul>
인지세 납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한민국 정부수입인지(사본) 또는 전자수입인지 납부확인증</li> <li>- '전자수입인지(e-revenuestamp.or.kr)' 사이트에서 구매 or 우체국 및 시중은행에서 구매</li> <li>- 수입인지 구매금액 : 1천만원 초과 ~ 3천만원 이하 : 2만원 / 3천만원 초과 ~ 5천만원 이하 : 4만원 / 5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 7만원 / 1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 15만원 / 10억원 초과 : 35만원</li> <li>- 구매절차 : 홈페이지 접속 → 회원가입 or 비회원 구매 → 구매 → 납부정보 입력(인지세납부 / 부동산 등 소유권이전 / 금액 선택 / 1건) → 테스트 출력 → 결제(계좌이체or신용카드) → 출력</li> <li>※ 주의사항 : 인지세 납부 이후 출력된 전자수입인지 원본의 변경(소인 등)시, 인지세를 재납부하는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li> </ul>
당첨 유형별 추가 보완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당첨 자격 서류검수 과정에서 사업주체가 추가로 요청한 서류</li> <li>※ 모든 당첨자는 부적격 사전 검수를 완료해야만 계약진행이 가능합니다.</li> </ul>
제3자 대리 계약 시 추가서류 (배우자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 계약 신청자로 간주하며 상기 구비사항 외에 다음의 서류를 추가로 구비하여야 합니다.</li> <li>- 당첨자의 인감증명서 1통(용도 : 아파트 계약 위임용) 단, 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의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li> <li>- 당첨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1통</li> <li>- 대리인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li> </ul>

- ※ 인감증명서의 용도란은 공란으로 발급하므로 용도를 직접 기재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단,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외국인은 공급 신청 시와 동일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상기 모든 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상기 구비사항이 완비된 경우에 한하여 계약이 가능합니다.
- ※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인(배우자, 직계존·비속 포함)으로 간주합니다.

**■ 계약 체결 조건 및 유의사항**

- 체결기간 준수
  - 지정 계약기간은 주택소유실태 및 과거 당첨사실 유무 전산검색 소요기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당첨자에 대한 주택소유실태 전산검색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 등 적격자(정당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을 체결합니다.
  -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증 절취, 청약관련 서류 변조 및 도용 등 불법행위로 적발된 경우 계약체결 후라도 당첨취소 및 고발조치하며 당첨통장 재사용이 불가합니다.
  - 지정 계약기간 내에 계약금 전부 또는 일부 금액을 납부하더라도 계약기간 내 계약 미체결시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본 주택에 청약하여 당첨될 경우, 계약체결 여부와 무관하게 당첨자로 전산 관리됩니다.
  - 정당 당첨자 계약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당첨권을 포기한 것으로 보며 계약기간 종료 이후 미계약 세대 발생 시 예비입주자에게 우선 공급합니다.
- 계약체결 이후 관련 법령 등의 처리 및 검증으로 인한 당첨 및 계약취소 확인 : 계약체결 후에도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될 경우 입주자 선정대상에서 제외되고, 공급계약을 취소합니다.
  - 당첨자 중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의 소유 여부가 신청한 사실과 다른 경우 - '주택 및 "분양권등" 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 참조
  -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증 절취, 청약 관련서류 변조 및 도용 등 불법행위로 적발된 경우
- 기타 계약조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9조에 준합니다.

**■ 부동산 거래 신고,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 신고 의무화**

- 부동산 거래신고,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 신고 의무화로 분양가 6억원 이상의 부동산 거래에 대하여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규정에 의거 주택매매 계약(최초 공급계약 및 분양권·입주권 전매를

포함)시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관할 소재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공동으로 '부동산거래신고'해야 하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및 별표1 규정에 의거 실제 거래가격 6억원 이상의 주택매매 계약(최초 공급계약 및 분양권·임주권 전매를 포함)의 부동산거래 신고 시 자금조달계획과 입주계획서 및 매수자 본인이 입주할지 여부, 입주 예정시기 등 거래대상 주택의 이용계획의 신고를 의무화합니다. 따라서 부동산 거래신고에 따른 필요 서류를 사업주체에 제공해야 하며, 신고를 거부하거나 서류 미비·미제출로 인하여 발생하는 과태료 부과 등의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제2항에 따라 부동산 거래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 분양대금 납부계좌

구 분	금융기관	계좌번호	예금주
분양대금	신협	131-022-298646	대한토지신탁주

- ※ 분양대금 계약금은 지정된 계약기간에 상기 계좌로 납부하여야 하며, 일부 입금 후 계약 미체결 시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되며, 당사가 규정한 일정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하며, 환불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이자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 ※ 무통장 입금 시 동·호수 7자리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하여야 합니다.(예시: 101동 1402호 홍길동: 1011402홍길동 / 102동 601호 홍길동: 1020601홍길동)
- ※ 지정된 분양대금(계약금, 중도금, 잔금)은 납부 지정일자에 상기 계좌로 입금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주체에서는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으며, 미납금액 관련하여 공급계약서에 따른 연체료가 가산됩니다.
- ※ 상기 분양대금 납부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분양대금은 인정하지 않으며,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및 계약 신청 시 제출서류 확인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를 달리한 부적격자로 판정될 경우 당사가 규정한 일정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하며, 환불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이자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 ■ 계약자 중도금 대출안내

- 본 아파트의 중도금 대출은 정부정책, 금융기관의 사정 등으로 인하여 불가할 수 있으며, 중도금 대출과 관련한 내용은 중도금 대출기관 알선이 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 중도금 대출관련 세부내용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대출금융기관 등이 결정되지 않았으며, 추후 별도 공지 및 안내 예정입니다. 계약자는 사업주체 및 시공사가 지정한 대출금융기관을 통해 중도금 대출이 가능하나, 중도금 대출 관련 정부 및 대출금융기관의 정책 및 대출상품의 종류, 계약자의 개인사정(신용불량, 대출한도 초과, 각종 보증서발급 제한 등) 등으로 대출한도가 개인별로 상이하거나 대출이 불가할 수도 있으므로 지정한 대출금융기관에 사전에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며, 대출 불가 및 축소 등의 사유로 인한 계약자의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사업주체 등에게 일체의 이익을 제기할 수 없으며, 계약자는 공급대금(미납대금, 연체료 포함)을 계약자의 부담으로 사업주체에게 납부하여야 합니다.
- 계약자는 법률의 변경 및 정부의 부동산 정책(주택담보대출의 제한 등), 금융시장 변화 또는 대출기관의 규제 등에 따라 사업주체의 중도금대출 알선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러한 제한으로 대출이 불가할 경우 분양대금은 계약자 본인 책임하에 조달하여 기일내에 납부하여야 합니다.(중도금대출 취급기관의 알선은 사업주체 및 시공사의 의무사항이 아니며, 계약자에 대한 편의제공에 불과함.)
- 적격대출 가능 계약자가 중도금대출을 받고자 하는 경우, 해당 계약자는 분양계약 체결 후 사업주체가 알선한 중도금대출 취급기관과 중도금대출을 별도로 체결하여야 하며, 대출 미신청자와 적격대출 가능 계약자도 중도금 대출 실행이전에 본인의 부적격 사유가 발생하여 대출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분양대금을 자기 책임하에 조달하여 기일내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정부정책, 대출취급기관, 사업주체의 사정 등으로 대출관련 제반 사항(대출 취급기관, 조건 등)이 변경되더라도 사업주체의 책임은 없습니다.
- 본 아파트의 중도금 대출에 대한 이자는 “중도금 무이자” 조건으로 전체 공급대금의 60% 범위 내에서 중도금 용자알선을 시행할 예정입니다.(단, 정부정책 및 금융권 사정 등의 사유로 다소 변경될 수 있음.)
- 본 아파트의 중도금 대출 조건(중도금 무이자)에 대하여 충분히 인지하여야 하며, 중도금 대출 미신청, 대출비율 축소, 대출 불가 시 계약자 본인 책임하에 공급대금을 정해진 납부일정에 맞춰 납부하여야 하며, 미납부시 공급 계약서에 따라 연체료 발생 및 계약해제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계약해제 시 위약금이 발생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람.)
- 사업주체 및 시공사가 지정하지 않은 대출금융기관으로부터 계약자가 직접 대출받은 경우에는 대출이자 대납이 불가하므로, 계약자가 대출이자를 해당기관에 직접 납부하여야 하며, “중도금 무이자” 용자 등 판촉조건에 상응되는 조건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중도금 대출협약 조건(중도금 무이자)에 의거 계약금 완납 이후 중도금 대출이 가능하며, 계약금 미납 시 중도금 대출이 불가하므로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주체의 부도, 파산 등으로 보증사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체가 부담하던 중도금 대출이자는 계약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금융기관의 대출조건에 따라 일부 중도금대출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중도금 대출에 필요한 대출취급(보증) 수수료(집단대출 보증기관의 보증수수료 등), 인지대 등 제반 경비는 금융기관 등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약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적격대출은 금융 신용불량 거래자, 타 은행 대출, 대출한도 및 건수 초과, 주택도시보증공사(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의 각종 대출보증서 발급제한 등 계약자 본인의 개인적인 사정 또는 정부의 금융정책 등에 의해 제한되고 있음을 계약자 본인이 인지하고, 중도금 대출이 불가하거나 중도금 대출한도가 부족할 경우 계약자는 분양대금 납부조건에 따라 중도금(잔금)을 직접 납부(이와 관련하여 사업주체 및 시공사가 별도로 분양대금 납부일정을 통지하지 않으며 미납 시 연체료가 가산됨.)하여야 하며, 분양대금 미납부시 공급계약서 조항에 따라 연체료 발생, 계약해제 사유가 될 수 있고, 계약 해제시 위약금이 발생하오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중도금 대출기간 이내라도 계약자의 금융 신용불량 등 결격사유 등이 발생하여 대출 금융기관의 중도금 대출중단 등에 따라 분양대금이 납부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 분양사무소는 대출기관이 아니므로 분양상담 시 대출여부에 대해 확정할 수 없으며, 추후 금융기관 심사를 통하여 대출여부가 결정됩니다. 이에 고객의 대출비율 축소 또는 대출불가에 대하여 분양상담(전화상담 포함) 내용을 근거로 시공사에 대출 책임을 요구할 수 없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대출취급기관과의 중도금 대출협약 등에 의거하여 대출 금융기관에 중도금 대출을 위한 계약사항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금융시장의 경색 또는 변동성으로 인하여 선정된 중도금대출 취급기관의 특유성(업종, 업태 등) 및 대출형태에 따라 부득이 계약자의 신용등급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적격대출 관련 중도금 대출 신청 관련 안내는 당사 의무사항이 아니며 “개인사유로 인한 대출 미신청” 또는 “금융거래 신용불량자 등” 계약자의 사정에 의한 대출 불가 등으로 발생하는 개인적인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계약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사업주체가 알선한 대출의 대출기간 만료시(준공 후 미입주 등) 금융기관의 대출기간 연장 및 공정률에 따른 중도금 납입일자의 변경에 대해 별도의 절차 없이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계약자는 입주 전까지 대출금을 상환하거나 담보대출로 전환하여야 하며, 대출금을 담보대출로 전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급금액을 전액 완납하고 소유권 이전 및 근저당권 설정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담보대출에 따른 보증수수료, 인지대 등 제반 수수료 및 근저당설정 비용 등은 대출취급기관이 정한 부당 주체가 부담하여야 하며, 담보 전환 시 대출한도, 대출금리 등 기타대출조건 등은 대출취급기관의 조건에 따르기로 합니다.

### ■ 이종당첨자 및 부적격당첨자의 처리 및 계약취소에 관한 사항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3항 제24호)

- 청약신청접수는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에 대하여 1인 1건만 신청가능하며, 1인 2건 이상 청약 신청 할 경우에는 모두를 무효처리 합니다.
- 당첨자 계약 체결기간 준수
  - 정당 당첨자 계약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당첨자의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기간 종료 이후 미계약 세대 발생 시 예비입주자에게 우선 공급하고 잔여세대에 대해서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공급합니다.
- 지정 계약기간 내에 계약금 전부 또는 일부 금액을 납부하더라도 계약기간 내 계약 미체결 시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입주대상자 자격확인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에 따라 당첨자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결과 및 계약 신청 시 제출서류 확인 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를 달리한 부적격자로 판정된 자에 대해서는 그 결과를 즉시 통보하며, 사업주체가 통보한 날부터 7일 내에 부적격 사항에 대한 소명 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동 기간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합니다.
- 부적격 사항 소명 안내 : 관련기관의 전산시스템과 입주자모집공고일 당시 입주대상자의 현황이 상이할 수 있으며, 부적격 사항 및 적격 여부 확인이 필요한 자료 통보된 경우 소명기간 내에 서류 확인 등을 통하여 소명을 할 경우에 한하여 계약체결이 가능합니다.
- 계약체결 이후 관련 법령 등의 처리 및 검증으로 인한 당첨 및 계약취소 확인 : 계약체결 후에도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될 경우 입주자 선정대상에서 제외되고, 공급계약을 취소합니다.
  - (1) 당첨자 중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의 소유 여부가 신청한 사실과 다른 경우 - '주택 및 "분양권등" 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 참조
  - (2)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증 절취, 청약 관련서류 변조 및 도용 등 불법행위로 적발된 경우
  - (3) 부적격 소명 대상자로서 사업주체가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토록 통보한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일정 기간(7일)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부적격당첨자는 건본주택에 방문하여 "당첨사실 삭제 요청서(당사 비치)" 작성 시 청약통장 재사용이 가능하나, 당첨일로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 과열지역 1년, 수도권 외 6개월, 위촉지역 3개월'(공급 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을 제한합니다.
- 계약신청 시 제출한 서류가 사실이 아님이 판명 된 경우에는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기 체결된 계약은 취소하며 당첨통장 재사용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당첨자로 관리하며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은 신청인에게 귀속됩니다.
- 부적격 당첨자로 판정된 자는 본 아파트의 예비입주자 선정 이후 임의공급 대상에 포함될 수 없습니다.
- 상기 기준에 의거 주택소유여부 판단 시 당첨자 본인,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전원)포함하며, 국토교통부에 무주택 여부를 검색하여 부정당첨자를 판명합니다.

### ■ 기타 유의사항

- 본 아파트 분양과 관련하여 주택 청약통장 및 주택 분양권을 불법 거래하다가 적발된 자는 「주택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주택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며, 「주택법」 제101조에 따라 형사 고발되어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거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 받게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주택법 제64조제1항을 위반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을 전매하거나 이의 전매를 알선한 자 및 「주택법」 제65조 제1항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10년의 범위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의 입주자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불법거래를 알선 또는 중개한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해서도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자격정지, 등록취소 등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 이와 관련하여 법원 등 공공기관으로부터 법 위반 여부 확인 등을 위한 개인정보 요구 시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 최초 계약자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분양계약이 취소되어 분양권 매수자(전매포함)의 피해가 인정 되더라도 사업주체의 책임이 없습니다.
-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증 절취, 청약관련서류 변조 및 도용, 주민등록법령 위반, 입주자저축 등을 타인 명의로 가입하거나 가입한 자의 입주자저축 등을 사실상 양도받아 신청 및 계약하는 등의 공급질서 교란 등 불법행위로 적발될 경우 관련법에 따라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취소 및 고발조치 합니다.
- 본 아파트는 투기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신청서의 내용변조 등의 행위로 주택공급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 등으로 관련 법령을 위반할 경우 법에 따라 처벌받게 됩니다.
- 본 아파트 공사 중 사업주체 또는 시공사의 귀책사유가 아닌 천재지변, 문화재 및 암반 발견, 노동조합의 파업·태업 및 전염병 발생, 정부의 정책이나 관계법령의 변경, 행정명령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 할 경우 예정된 공사 일정 및 입주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주지원보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본 아파트는 교육청이나 인허가청 요청 시 분양계약 관련사항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관련으로 개인정보 요구 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존에 관한 법률」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정보제공을 할 수 있습니다.
- 일부세대는 공사 시행중에 품질관리를 위하여 샘플하우스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 청약신청 및 계약 전 사업부지 현장을 방문하시어 주변 혐오시설 유무, 도로, 소음, 조망, 일조, 진입로 등 주위 환경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현장여건 미확인으로 인한 책임은 계약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청약신청 및 계약장소에서 발생하는 각종 상행위(인테리어 시공, 부동산 중개업자의 영업행위 등)는 사업주체 및 시공사와는 무관한 사항이므로, 청약 및 계약 시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 이후 주소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변경 내용을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 즉시 서면(주민등록등본 포함) 통보하시기 바랍니다.
- 보존등기 및 이전등기는 입주일과 관계없이 지적공부정리 절차 등으로 지연될 수 있습니다.(특히 대지의 이전등기는 상당기간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건물등기와 대지권 등기를 별도로 이행하여야 함)
- 타사 또는 시공사의 타 분양아파트의 마감사양, 설치 부대편의시설 및 조경과 본 아파트를 비교하여 건본주택 및 사업계획승인도서에서 제시한 사항 외에 추가적인 마감사양 및 부대 편의시설, 조경의 설치 또는 교체를 요구할 수 없으므로 타 분양 아파트와 충분히 비교 검토한 후에 계약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중도금 대출에 필요한 보증수수료 등 제반경비는 계약자의 부담으로 하며, 금융신용불량거래자 등 계약자의 사정에 의한 중도금 대출 불가자는 납부조건에 따라 계약자가 직접 중도금을 납부하여야합니다.
- 이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계법령에 따르며, 관계법령 개정에 따라 추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VII**

**발코니확장 및 추가선택품목**

■ 발코니 확장 : 분양가 포함

1) 발코니 확장 관련 유의사항

- 주택형별 발코니 확장 면적이 다르므로 반드시 확인하고 계약하여야 하며, 추후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발코니 확장비용은 분양가 포함입니다**
- 발코니 확장 창호는 내풍압 구조검토 또는 업체선정 등의 결과에 따라 세대별, 층별, 위치별로 창호 규격 및 사양(유리, 하드웨어, 창틀 등)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에 설치되는 사시는 기능 및 미관 개선을 위하여 형태, 재질 및 사양이 실 시공 시 인, 허가 협의 완료 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 창호는 향후 개폐방향, 제조사, 프레임, 유리, 손잡이 등의 사양 및 규격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 각 세대의 발코니에 필요시 선홍통 및 드레인 등이 설치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에는 드레인 및 선홍통이 설치되는 발코니와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가 있으며, 위치와 개수는 추가되거나 변경될 수 있으며, 드레인이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 내에서는 물을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 발코니 확장 면적은 발코니 면적 산정기준에 의하여 계산한 면적이므로, 실사용 면적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 계약체결 이후 관계법령 해석상 차이 등의 사유로 발코니 확장 공사가 일부 변경될 경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발코니 확장 시 동일평형이라도 해당 동, 호수에 따라 확장 구간의 폭, 깊이 및 천장고가 다소 상이할 수 있습니다.(허용오차 내)
- 발코니 확장에 따른 일부 배선기구 및 조명기구의 사양, 수량, 종류,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위세대의 설계 당시 소비자의 성향 등을 고려해 발코니 확장을 감안하여 설계하였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확장하지 않는 발코니는 단열공간이 아니므로 단열재 시공이 되지 않습니다.(결로 및 곰팡이 등의 하자 발생 시 하자 보수 대상에서 제외됨)
- 발코니에는 상부 배수배관이 노출되며, 소음이 발생할 수 있음. 펜트하우스 하부세대는 거실 천장 내 상부세대 배수배관이 설치 될 수 있으며,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발코니(일부)또는 실외기실 공간에 환기시스템(장비) 및 환기시스템 배관이 설치되며, 설치에 따른 배관노출, 건축입면 및 내부마감(창호, 외부그릴, 전등 사이즈 및 위치, 형태)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 공사 선택 시 확장 부위는 결로 등이 생길 수 있고 직접 외기에 면해 상대적인 추위를 느낄 수 있으며, 실내습도 등 생활여건에 따라 발코니 사시 및 유리창 표면에 결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며 이로 인하여 사업주체 및 시공자, 위탁자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수전이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 및 화재 시 대피공간은 배수설비가 설치되지 않으며 물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 발코니 부위에 설치되는 각종 설비 배관은 노출배관(천장, 벽)으로 미관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며,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위세대 발코니 및 실외기실에 설치되는 각종 설비 노출배관(천장, 벽)은 주택형별에 따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실외기실에 설치되는 그릴의 형태 및 크기는 주택형별에 따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발코니에 전열교환기 설치 여부에 따라 주택형별의 발코니 외부 창호 사이즈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주택형별 단위세대 구조에 따라 발코니 면적 및 확장 면적 등이 주택형별 또는 각 호별로 다를 수 있으며, 구조 및 기능 만족을 위하여 마감재료의 특성과 규격이 다를 수 있으며, 추후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발코니 확장으로 인하여 추가로 생기는 침실(거실)부분에 가구 배치로 인하여 어린이들이 떨어지는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니, 가구 배치 시 창문과 이격 또는 난간 높이를 고려하여 안전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추가 선택 품목 - 시스템 에어컨

(단위 : 원, 부가가치세 포함)

품 목	타입	공급금액	계약금(10%)	잔금(90%)	
			계약시	입주지정일	
시스템 에어컨 (공기청정기능 포함)	선택1옵션 : 거실/안방 (시스템 에어컨 설치형)	84A,B,C,D	3,610,000	361,000	3,249,000
	선택2옵션 : 거실/안방, 방1 (시스템 에어컨 설치형)	84A,B,C,D	5,020,000	502,000	4,518,000
	선택3옵션 : 거실/안방, 방1, 방2 (시스템 에어컨 설치형)	84A,B,C,D	6,640,000	664,000	5,976,000
	선택4옵션 : 거실/안방, 방1, 방2, 주방및식당(알파룸) (시스템 에어컨 설치형)	84A	7,880,000	788,000	7,092,000
	선택5옵션 : 거실/안방, 방1, 방2, 방3, 주방및식당,가족실, 베란다 (시스템 에어컨 설치형)	176	13,500,000	1,350,000	12,150,000
	선택6옵션 : 거실/안방, 방1, 방2, 주방및식당, 서재, 베란다 (시스템 에어컨 설치형)	147	12,000,000	1,200,000	10,800,000
	선택7옵션 : 거실/안방, 방1, 방2, 주방및식당 (시스템 에어컨 설치형)	129	8,800,000	880,000	7,920,000

- 시스템에어컨 선택옵션에 따라서 에어컨 수량 및 냉방 용량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상기 금액은 이에 따른 비용을 반영한 금액입니다.
- 시공상의 문제로 일정시점 이후에는 시스템에어컨 유상옵션 추가 신청 및 계약변경(신규,해지)이 불가하며, 시스템에어컨 및 유상옵션 계약일은 추후 별도 고지 예정입니다.
- 시스템에어컨 선택1옵션 선택 시 실내기가 설치되는 실 이외의 잔여실에는 천정 냉매배관 없습니다. 계약시 평형별 실내기 설치 위치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시스템에어컨 선택1옵션 선택 후, 추가적인 실내기 설치는 입주자 분이며, 추가적인 실외기 설치 혹은 교체가 필요합니다.
- 현재 시스템 에어컨 제조사는 삼성전자이나 공사여건에 따라 향후 제조사 및 브랜드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시스템에어컨 미선택시 거실(스탠드형), 안방(벽걸이형)에 각 1개소 골조매립냉매배관 및 에어컨용 콘센트가 기본으로 설치되며 이외의 실에는 골조냉매매립배관이 설치되지 않습니다.
- 시스템에어컨의 실내기 설치 위치는 타입별·세대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계약자가 임의로 위치 지정을 할 수 없습니다.
- 시스템에어컨은 선택옵션 내에서만 신청 가능하며 부분적인 선택은 불가합니다.
- 시스템에어컨은 냉방 전용제품으로 난방운전이 불가하며, 운전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시스템에어컨 설치로 인하여 우물천장의 크기 및 깊이, 에어컨 설치부위의 천장 높이, 환기 디퓨저 위치, 스프링클러 위치, 등기구 위치, 천정 배관 위치 등이 변경될 수 있고, 시공여건에 시스템에어컨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시스템에어컨 위치는 등기구 위치를 고려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 제공되는 시스템에어컨 컨트롤러는 무선(리모컨)으로 제공되며, 실내기 1대당 1개가 제공됩니다.
- 시스템에어컨 유상옵션 선택에 따라 각 세대내 실외기실에는 에어컨 실외기가 설치되며, 이로 인한 실외기실 공간이 협소해 질 수 있습니다.
- 천장형 시스템에어컨 실외기는 향후 사용성을 고려해 전실의 용량에 맞는 제품이 설치됩니다.
- 시스템 에어컨의 제조사(삼성전자)와 모델은 제품의 품질, 품귀 또는 신제품 출시, 성능 개선 등의 사유로 동등 수준의 타사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기 선정된 제품의 형태, 설치 위치 등의 세부 사항은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천장형 시스템에어컨 선택시에는 기본으로 시공되는 거실(스탠드형), 안방(벽걸이)에 일반에어컨용 매립배관 및 에어컨용 콘센트는 설치되지 않으며 판매가격은 기존설치품목의 미설치로 인한 감소비용과 추가 설치품목의 증가비용이 정산된 금액입니다.

■ 추가 선택 품목 - 가전 옵션

(단위 : 원, 부가가치세 포함)

품목	제조사	모델명	타입	공급금액	계약금(10%)	잔금(90%)
					계약시	입주지정일
3구 하이브리드 쿡탑 (2구인덕선,1구하이라이트)	SK매직	ERAHF33L	전타입	700,000	70,000	630,000
3구 인덕선	SK매직	IHRBF32C	전타입	810,000	81,000	729,000
빌트인 패키지(냉장/냉동/김치냉장고)	삼성전자 (비스포크)	RZ34C7905AP(냉동)/RR40C7805AP(냉장)/RQ34C7915AP(김치) 글램글라스	전타입	4,100,000	410,000	3,690,000
빌트인 식기세척기	삼성전자	DW60B5095UG	전타입	900,000	90,000	810,000
빌트인 식기세척기	SK매직	DWA91R6B	전타입	1,100,000	110,000	990,000
주방 TV	코콤	HKP-101K	전타입	530,000	53,000	477,000

■ 추가 선택 품목 - 주방 옵션

(단위 : 원, 부가가치세 포함)

품 목		타입	공급금액	계약금(10%)	잔금(90%)
				계약시	입주지정일
주방 상판 및 벽체 고급화	세라믹 타일(그레이스톤)	84A	3,510,000	351,000	3,159,000
		84B	3,740,000	374,000	3,366,000
		84C	3,730,000	373,000	3,357,000
		84D	3,500,000	350,000	3,150,000
주방확장	비스포크요 큰장 (주방키큰장)	84A	2,880,000	288,000	2,592,000
	알파룸 확장시 (시스템선반)	84A	540,000	54,000	486,000
	알파룸 확장시 (장식장 )	84A	3,360,000	336,000	3,024,000
	주방 우물천정	84A	400,000	40,000	360,000

- 주방 가구 고급화 유상옵션 및 주방 상판&벽체 유상옵션의 색상 및 구성은 평형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 주방 가전 옵션 미선택시 수납공간으로 시공되며 견본주택의 안내 이미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주방 가전 선택에 따른 공급금액은 기본으로 제공되는 주방가구의 금액을 차감하여 산출된 금액입니다.
- 주방 가전은 선택사항별 지정된 위치에 설치되며 계약자가 임의로 위치 지정을 할 수 없습니다.

■ 추가 선택 품목 - 바닥재 옵션

(단위 : 원, 부가가치세 포함)

품목			타입	공급금액	계약금(10%)	잔금(90%)
					계약시	입주지정일
마루 고급화	포세린 타일	거실+주방	84A	610,000	61,000	549,000
			84B	710,000	71,000	639,000
			84C	740,000	74,000	666,000
			84D	710,000	71,000	639,000

- 바닥재 유상옵션의 색상은 평형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 추가 선택 품목 - 거실 옵션

(단위 : 원, 부가가치세 포함)

품목			타입	공급금액	계약금(10%)	잔금(90%)
					계약시	입주지정일
아트월	세라믹타일	거실	84A	1,220,000	122,000	1,098,000
			84B	1,250,000	125,000	1,125,000
			84C	1,240,000	124,000	1,116,000
			84D	1,240,000	124,000	1,116,000
천정등박스	간접조명	거실	전타입	720,000	72,000	648,000

■ 추가 선택 품목 - 현관 옵션

(단위 : 원, 부가가치세 포함)

품목		타입	공급금액	계약금(10%)	잔금(90%)
				계약시	입주지정일
현관 중문	현관 중문 (3연동 슬라이딩도어)	전타입	1,000,000	100,000	900,000

■ 추가 선택 품목 - 욕실 옵션

(단위 : 원, 부가가치세 포함)

품목		타입	설치개소	공급금액	계약금(10%)	잔금(90%)
					계약시	입주지정일
공용욕실	비데일체형 양변기	전타입	1	450,000	45,000	405,000
부부욕실	비데일체형 양변기	전타입	1	250,000	25,000	225,000

■ 추가 선택 품목 유의사항

- 본 공고 외 추가선택품목 설치에 관한 내용은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시행지침」 제4조에 의거 분양가격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품목입니다.
- 추가 선택 품목은 계약자가 별도 계약하는 추가 선택사항 이며, 취득세 및 제세공과금이 미포함된 금액으로 추후 관할관청으로부터 관련 세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이는 계약자가 납부하여야 합니다.
- 상기 제품의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 품질, 품귀 또는 신제품 출시, 성능개선 등의 사유로 동급이상으로 변경 될 수 있으며, 기타 신청형별 설치 위치 등 세부 사항은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시공상의 문제로 추가선택품목 계약일 이후에는 추가 계약이 불가하며, 계약체결 후 해약은 공사의 착수시점 이후 불가합니다.

- 상기 제품의 색상은 평형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추가 선택품목 미선택시 기본형으로 설치되며 선택품목 산정 시 기본형에 해당하는 비용을 감액하여 반영 된 것입니다.

■ **옵션품목 납부계좌 및 납부방법**

구분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예금주
옵션납부 계좌	신한은행	150-000-478390	에스제이건설(주) 김효석

- 옵션품목은 계약체결 전에 상기 계좌로 공급 계약금액을 입금하여야 하며, 중도금 및 잔금도 본 계좌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 상기 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옵션품목비용은 인정하지 않으며, 분양대금 입금계좌와 혼돈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 지정된 추가선택품목(옵션)의 중도금 및 잔금은 납부 지정일자에 입금 바라며, 사업주체에서는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 상기 계좌와 아파트 공급대금 계좌가 상이하므로 입금 시 유의바랍니다.
- 옵션품목비용은 상기 납부계좌로 반드시 무통장 입금 또는 인터넷뱅킹(견본주택 현금수납 불가)하시기 바라며, 입금 시 계약할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예 : 101501호 홍길동 →101501홍길동)
- 옵션품목비용을 납부한 무통장 입금증 또는 인터넷뱅킹 확인서 등은 계약체결 시 지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착오 납입에 따른 문제발생시 사업주체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 상기 제품의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 품질, 품귀 또는 성능개선 등의 사유로 동등 수준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추가 유상옵션 계약은 사업주체와 무관하며, 시공사와 별도 계약을 통해 진행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Ⅷ 기타 계약자 안내**

■ **분양형토지신탁**

- ※ 본 분양목적물은 「신탁법」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행위탁자인 김원섭, 임수정, 임수희, 한옥철(이하 '김원섭 외 3명')과 토지를 수탁 받은 시행수탁자 대한토지신탁(주) 간에 체결한 (분양형)토지신탁 계약 방식으로 시행 및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분양계약자는 다음 사항을 인지하여야 합니다.
- (분양형)토지신탁계약에 근거하여 시행수탁자인 대한토지신탁(주)는 매도자의 지위를 가지는 자로서 신탁재산 및 (분양형)토지신탁계약의 업무범위 내에서 책임을 부담하며, 본 사업관련 실질적 사업 주체로서의 의무와 책임은 신탁계약의 시행위탁자 겸 수익자인 김원섭 외 3명에게 있습니다.
- 본 계약과 관련된 분양대금은 반드시 본 공고에 규정된 시행수탁자[대한토지신탁(주)] 명의로 계좌에 입금하여야 하며, 그 외의 방법으로 납부한 경우에는 분양(매매)대금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며, 매도인에게 그 효력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 분양계약자에게 본 계약 목적물의 소유권이전이 완료되는 시점과 시행위탁자와 시행수탁자간 신탁계약 해지 또는 종료되는 시점 중 빠른 시점에, 분양계약상 매도인의 지위 및 제반 권리의무(하자보수 및 이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의무 포함)는 계약변경 등 별도의 조치 없이 시행위탁자 겸 수익자인 김원섭 외 3명에게 면책적으로 포괄 승계되며, 이와 관련하여 분양계약자는 시행수탁자에게 일체의 이익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시행수탁자는 분양계약과 관련한 매도인(공급자)으로서의 제반 의무(공급금액 반환, 지체상금 배상을 포함하며 이에 한하지 않음)를 현존하는 신탁재산 범위 내에서만 부담하며,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책임범위에 따라 시행위탁자에게 있습니다.
- 신탁계약의 해지 또는 종료 전과 후를 불문하고 본 공급계약 대상 재산에 대한 일체의 하자보수책임(사용감사전 발생하자 포함)은 시행위탁자 겸 수익자인 김원섭 외 3명과 시공사인 에스제이건설(주)에게 있습니다.
- 분양대금은 (분양형)토지신탁계약에서 정한 토지비, 공사비, 설계비, 감리비 및 그 밖의 부대사업비 등 해당 분양 사업과 관련된 용도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 이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 **입주자 사전점검 안내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3항 제27호**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3항 제27호에 따라 도장공사·도배공사·가구공사·타일공사·주방용구 공사 및 위생가구공사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주자 사전 방문을 실시할 예정이며, 정확한 사전 방문 예정일자는 별도 통보합니다.
- 사업주체는 「주택법」 제48조의2 및 「주택법 시행규칙」 제20조의2에 따라 입주지정기간 시작일 45일 전까지 2일 이상 사전방문행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 **입주예정일 : 2026년 06월 예정** (향후 일정 등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될 경우 추후 개별 통보키로 합니다.)

- 실입주일이 입주예정일 보다 앞당겨질 경우 미도래 중도금과 잔금을 실입주지정일에 함께 납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선납할인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입주예정일은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공사 중 천재지변, 문화재 발견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주 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입주지연보상금을 지급

하지 않습니다.

- 2021.02.02.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입주예정월 2개월전 실입주월을 통보할 예정이며, 실입주 1개월 전에 실입주일을 통보할 예정입니다.
- 2021.02.02.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500세대 이상 단지는 60일 이상의 입주지정기간을 제공합니다.
- 입주지정기간이 경과시 입주(거주)여부와 관계없이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익일부터 관리비 등이 부과되어 입주예정자가 직접 납부하여야 합니다.
- 입주시 단지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선수관리비를 부과합니다.

■ **부대복리시설** : 관리사무소(생활지원센터), 방재센터, 근로자휴게소, 주민공동시설(체력단련실, 키즈놀이방, 입주자대표회의실) 등

■ **주차장 차로 및 출입구의 높이**

구분	주차장 차로의 높이	주차장 출입구의 높이
지상 1개층(구역별)	2.8m (단, 주차공간은 2.7m 이상)	2.8m
지상 3개층(구역별)	2.3m (단, 주차공간은 2.1m 이상)	2.3m

■ **감리회사 및 감리금액**

(단위 : 원, 부가가치세 별도)

구분	건축 / 토목 / 기계	소방	전기 / 통신
회사명	운생동 건축사 사무소(주)	(주)삼부감리	(주)극동전기기술단
감리금액	697,918,000	59,400,000	191,400,000

※ 감리금액은 감리회사와의 계약변경 등으로 증감될 수 있습니다.(이 경우 별도 정산하지 않음.)

■ **시행자 및 시공회사**

구분	시행수탁자	대표시공사	대표시행위탁자
상호(성)명	대한토지신탁(주)	(주)에스제이건설	김원섭
주소	서울 강남구 영동대로 517, 26층, 33층 (삼성동, 아셈타워)	경북 포항시 북구 흥해읍 중성로32번길 18, 제501-2호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곡로 260, 409동 502호
법인등록번호(생년월일)	110111-1492513	110111-1716848	1953년 06월 25일

■ **보증관련 유의사항**

- 본 아파트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을 득한 아파트입니다.
- 분양계약자는 사업주체의 부도, 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변경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 주요 내용

보증서 번호	보증금액	보증기간
제01282024-101-0001800호	₩42,680,400,000원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일로부터 건물소유권 보존등기일(사용검사 또는 해당 사업장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한 동별 사용검사 포함)까지

■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공사)의 주택분양보증약관 제1조 (보증채무의 내용)**

공사는 「주택도시보증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라 주채무자가 보증사고로 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 해당 주택의 분양이행 또는 환급이행 책임을 부담합니다.

<p>【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를 의미합니다. 이하 같습니다.</p> <p>【주채무자】 보증서에 적힌 사업주체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p> <p>【분양이행】 주택법령에서 정한 주택건설기준 및 해당 사업장의 사업계획승인서,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하여 입주를 마침</p> <p>【환급이행】 보증채권자가 납부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되돌려 줌</p>
---

■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공사)의 주택분양보증약관 제2조 (보증이행 대상이 아닌 채무 및 잔여입주금 등의 납부)**

- ①공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분양권 양도자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포함)에는 보증채권자에게 보증채무를 이행하지 않습니다.
1. 천재지변, 전쟁, 내란,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사정으로 주채무자가 주택분양계약을 이행하지 못하여 발생한 채무
  2. 주채무자가 대물변제·허위계약·이중계약 등 정상계약자가 아닌 자에게 부담하는 채무



【대물변제】 주채무자의 채권자가 그 채권에 대하여 주채무자가 분양하는 아파트 등에 관한 분양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변제에 갈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허위계약】 분양의사가 없는 자가 주채무자의 자금 유통 등을 돕기 위하여 명의를 빌려주어 분양계약하는 것으로 차명계약을 의미합니다.

### 3. 입주자모집공고 전에 주택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입주금

【입주금】 주채무자가 보증채권자로부터 받는 계약금과 중도금 및 잔금을 말합니다.

4. 보증채권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지정한 입주금납부계획(입주자모집공고에서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주택분양계약서에서 지정한 계획을, 공사가 입주금납부계획을 변경·통보한 후에는 변경된 납부계획을 말함)에 납부하지 않은 입주금.
  5. 공사가 보증채권자에게 입주금의 납부충지를 알린 후에 그 납부충지통보계획에 납부한 입주금
  6. 보증채권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납부기일 전에 납부한 입주금중 납부기일이 보증사고일 후에 해당하는 입주금. 다만, 공사가 입주금을 관리(주채무자 등과 공동관리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계획에 납부된 입주금은 제외합니다.
  7. 보증채권자가 분양계약서에서 정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넘어 납부한 입주금
  8. 보증채권자가 납부한 입주금에 대한 이자, 비용, 그 밖의 종속채무
  9. 보증채권자가 대출받은 입주금 대출금의 이자
  10. 보증채권자가 입주금의 납부지연으로 납부한 지연배상금
  11. 보증사고 전에 주택분양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하여 주채무자가 보증채권자에게 되돌려 주어야 할 입주금. 다만, 보증사고 사유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유로 보증채권자가 보증사고 발생 이전에 분양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12. 주채무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입주예정일 이내에 입주를 시키지 못한 경우의 지체상금
  13.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주택 또는 일반에게 분양되는 복리시설의 분양가격에 포함되지 않은 사양선택 품목(예시:흡오토, 발코니샤시, 마이너스오피션 부위, 그 밖의 마감재공사)과 관련한 금액
  14. 보증채권자가 제5조의 보증채무이행 청구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3조의 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등 그 밖에 보증채권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발생하거나 증가된 채무
  15.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사 등과 도급관계에 있는 수급인, 그 대표자 또는 임직원 등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사 등에게 자금조달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여 납부한 입주금
  16.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사 또는 그 대표자 등이 보증채권자에 대한 채무상환을 위하여 납부한 입주금
  17.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사 또는 그 대표자 등으로부터 계약금 등을 빌려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입주금
- ②공사가 제6조에 따라 분양이행으로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에는 보증채권자는 잔여입주금 및 제1항 제4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입주금을 공사에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제1항 제6호에 해당하는 입주금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잔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1. 사용검사일 이후에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증사고를 알리기 전까지 납부한 잔금
  2. 임시사용승인일 이후에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증사고를 알리기 전까지 납부한 잔금 중 전체 입주금의 90퍼센트 이내에 해당하는 잔금

【보증채권자】 보증서에 적힌 사업에 대하여 주택법령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준수하여 주채무자와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분양권 양수자를 포함)를 말합니다. 다만, 법인이 주택을 분양받는 경우에는 주택분양계약 이전에 그 주택분양계약에 대하여 공사에 직접 보증편입을 요청하고 동의를 받은 법인만 보증채권자로 봅니다. 이하 같습니다.

### ■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공사)의 주택분양보증약관 제4조 (보증사고)

①보증사고란 보증기간 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주채무자의 정상적인 주택분양계약 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태를 말합니다.

1. 주채무자에게 부도·파산·사업포기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예정공정률(주채무자가 감리자에게 제출하는 예정공정표상의 공정률을 말함. 이하 같음)보다 25퍼센트P 이상 부족하여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다만, 입주예정자가 없는 경우에는 이행청구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3.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75퍼센트를 넘는 경우로서 실행공정이 정당한 사유 없이 예정공정보다 6개월 이상 지연되어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4. 시공자의 부도·파산 등으로 공사 중단 상태가 3개월 이상 지속되어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보증기간】 해당 주택사업의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일(복리시설의 경우 신고일을 말함)부터 건물소유권보존증기일(사용검사 또는 해당 사업장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한 동별사용검사를 받은 경우에 한함)까지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②보증사고일은 공사가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사고 안내문으로 알리면서 다음 각 호 중에서 보증사고일로 지정한 날을 말합니다. 이 경우 공사는 보증서에 적힌 사업의 입주자모집공고를 한 일간지(공고를 한 일간지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1개 일간지를 말함)에 실어 통보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이하 같습니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부도·파산일, 사업포기 관련 문서접수일 등
2. 제1항 제2호에서 제4호의 경우에는 보증이행청구 접수일

※ 분양계약자는 사업주체의 부도, 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체가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변경되는 것에 동의함

※ 아파트 공사 진행 정보 제공 : 분양보증을 받은 아파트 사업장의 공사진행 정보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모바일 어플리케이션(HUG-i)를 통해 확인할 수 있음

■ 하자보수 등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5조, 「공동주택관리법」 제36조, 제37조 및 동법시행령 제36조, 제37조, 제38조에 의거 적용됩니다.

■ 친환경주택의 성능수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3항 제21호에 따라 친환경주택의 성능수준을 다음과 같이 표시함.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4조 적용)

의무사항		적용여부	사양, 성능, 설치위치, 설치개수(필요시)
건축부문 설계기준 (제7조제3항 제1호)	단열조치 준수(가목)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6조제1호에 의한 단열조치를 준수
	바닥난방의 단열재 설치(나목)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6조제3호에 의한 바닥난방에서 단열재의 설치방법을 준수
	방습층 설치(다목)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6조제4호에 의한 기밀 및 결로방지 등을 위한 조치를 준수
기계부문 설계기준 (제7조제3항 제2호)	설계용 외기조건 준수(가목) (냉난방설비가 없는 경우 제외)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8조제1호에 의한 설계용 외기조건 준수
	열원 및 반송설비 조건(나목)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8조제2호에 의한 열원 및 반송설비 조건 준수
	고효율 가정용보일러(다목)	○	가정용보일러는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에 따른 에너지소비효율1등급 이상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고효율 전동기(라목)	○	전동기(단, 0.7kW 이하 전동기, 소방 및 제연송풍기용 전동기는 제외)는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에 따른 고효율에너지기자재로 인증받은 제품 또는 최저소비효율기준을 만족하는 제품을 사용
	고효율 난방, 급탕·급수펌프(마목)	○	난방, 급탕 및 급수펌프는 고효율에너지기자재로 인증받은 제품을 사용하거나 그 평균 효율이 KS 규격에서 정해진 기준 효율의 1.12배 이상의 제품을 사용
	절수형설비 설치(바목)	○	세대 내에 설치되는 수전류는 「수도법」 제15조 및 「수도법시행규칙」 제1조의2, 별표2에 따른 절수형 설비로 설치
	실별 온도조절장치(사목)	○	세대 내에는 각 실별난방온도를 조절할 수 있는 온도조절장치를 설치
전기부문 설계기준 (제7조제3항 제3호)	수변전설비 설치(가목)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10조제1호에 의한 수변전설비를 설치
	간선 및 동력설비 설치(나목)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10조제2호에 의한 간선 및 동력설비를 설치
	조명설치(다목)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10조제3호에 의한 조명설비를 설치
	대기전력자동차단장치 설치(라목)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10조제4호에 의한 대기전력자동차단장치를 설치
	공용화장실 자동정열스위치(마목)	○	단지 내의 공용화장실에는 화장실의 사용여부에 따라 자동으로 정열되는 스위치를 설치

※ 공동주택성능등급 인증서는 2017년 이전 사업승인으로 인증 제외대상 현장입니다.

※ 각 인증별 등급의 항목별 점수와 평가결과는 현장여건 및 본인증 심사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각 인증에 제시된 시험성적서는 단순 샘플자료이며, 현장여건 및 본시공, 인증기관 협의 등에 따라 동등 수준을 가진 제품이나 기술로 변경(설계변경 포함)될 수 있습니다.

**IX 유의사항**

※ 반드시 확인하시어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공통사항

- 본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법」, 「건축법」, 「주택공급에 관한규칙」 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 당 사업은 2019년 8월 29일 최초 사업승인을 득한 사업으로 일부 규정은 최초 승인당시의 규정을 적용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 주택법 제60조 3항에 따라 건본주택에 사용된 마감자재 목록표와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평면도 및 시방서는 건본주택에 열람 가능토록 비치되어 있습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 이전 제작, 배포된 홍보물은 사전 홍보 시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관련 사항별 관계 기관에 반드시 본인 확인 후 청약 계약을 하여야 하며 향후 미확인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기재사항의 오류가 있을 시는 관계법령이 우선합니다.
- 본 공고와 공급(분양)계약서 내용이 상이할 경우 공급(분양)계약서가 우선합니다.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서류의 결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일방적으로 해약 조치할 수 있습니다.

- 기 청약자격 전산수속한 자 중 주민등록사항(거주지역, 세대주 기간, 부양가족 등)등의 청약자격이 변동된 자는 청약신청일 이전에 관련서류를 제출하여 전산수속 사항을 변경한 후 신청하여야 하며, 사전에 변경 요청하지 않을 경우에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주택공급신청서 상 단말기로 인지된 내용과 청약자 기재사항을 반드시 대조하여 이상 유무를 본인이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
- 주택소유로 보지 않는 경우 등 주택소유관련 유의사항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 및 계약 전에 사업부지(현장)을 반드시 방문하시어 주변현황 및 현장여건, 주변개발, 조망권, 일조여부 등을 확인 하신 후 청약신청 및 계약체결하시기 바라며 미확인 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청약신청 및 계약 장소에서 발생하는 각종 상행위(인테리어 시공, 부동산 중개업자의 영업행위 등)는 시행자 및 시공자와 무관함으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사업지의 소유권 보존등기 및 이전등기는 입주일과 관계없이 지적공부정리 절차 등으로 지연될 수 있습니다. (특히 대지의 이전 등기는 상당기간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건물등기와 대지권 등기를 별도로 이행 하여야 합니다.)
- 사업부지면적은 향후 지적확정 측량 결과 또는 공부정리결과에 따라 증감이 있을 수 있으며, 세대별 대지지분은 주택법에 의거 주택형별 전용면적비율에 따라 배분하였고 향후 준공 또는 소유권 이전 등기 시 설계 인허가 변경, 지적확정측량 및 공부정리결과 등에 따른 대지면적 확정,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 절차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면적증감이 있을 수 있으며, 소수점 이하의 면적증감에는 상호 정산하지 않습니다.
- 주변의 신축 건물 및 공용시설물 및 도로 및 도로선형의 변경, 설치용벽, 석축 등의 종류, 높이, 이격거리, 조경 등의 변경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환경권, 사생활권이 침해 및 소음피해가 있을 수 있으며, 공공영역인 D/A, 상가, 기타 부대시설, 조경 등의 설치로 인해서도 일조권, 조망권, 환경권, 사생활침해 및 소음 피해 등이 발생 할 수 있습니다.
- 건물 시공 상 하자에 대하여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5조, 「공동주택관리법」 제36조, 제37조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 제37조, 제38조에 의거 적용됩니다.
- 본 아파트는 교육청이나 인허가청 요청 시 분양계약 관련사항(일부 개인정보 포함)을 제출 할 수도 있습니다.
- 입주 후 불법구조 변경 시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계약자가 중도금대출을 받은 경우, 계약자는 소유권 이전시 대출금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 계약 및 등기절차에 협조하여야 하고, 해당 분양주택의 담보평가결과 담보 부족분이 발생할 때에는 담보 부족분에 대한 중도금 대출금액을 계약자가 책임지고 대출 금융기관에 상환해야 합니다.
- 본 주택의 계약시점에 따라 매도인의 분양조건(분양가격, 옵션제공 등)이 변동될 수 있으며, 추후 소급적용이 불가, 이에 따른 곤란함이 없도록 명확히 인지하고 계약하여야 한다.
- "사업주체" 또는 "시공자"는 준공 후 입주자의 원활한 입주 업무 지원, 신속한 하자보수 및 사후관리를 위하여 아파트 및 부대시설의 일부를 일정기간(입주업무는 입주지정기간 시작일로부터 최대 5개월, 하자보수 업무는 입주지정기간 시작일로부터 최대 12개월)동안 입주지원센터(가칭) 및 현장A/S센터(가칭)로 사용하며, "을"은 "사업주체" 또는 "시공자"에게 이에 따라 발생하는 시설 사용에 대한 일체비용(임대료 등) 및 시설 이전·축소 등을 요구할 수 없음을 명확히 인지하고 계약하여야 합니다.
- "사업주체" 또는 "사업주체"가 선정한 관리자가 성능시험 등을 통하여 품질 또는 성능 확인 후 현장 시공에 적합하다고 승인하여 설치한 자재 또는 제품에 대하여, 시공자가 설계도면 및 시방서 등에 따라 시공한 경우 설치(시공) 당시부터 성능미달의 제품을 설치하였다거나 시공 및 설치상의 하자가 있었음이 밝혀지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입주이후에 성능미달 사실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시공자에게 품질 또는 성능미달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없으며, 입주 이후 "수분양자(입주자)"의 사용에 따른 자재 또는 제품의 성능저하 발생시 "수분양자(입주자) 또는 관리주체"가 유지 보수 및 관리하여야 하며, 입주 이후에 발생하는 유지 보수 및 관리상의 문제로 인한 성능미달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수분양자(입주자) 또는 관리주체"의 책임입니다.
- 외국인(법인·단체포함)이 국내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 가. 국내 거주 외국인이 주거목적의 국내 주택구입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계약체결일 부터 60일 이내에 외국인 부동산 취득신고를 해야 함.(단, 공급계약이나, 매매는 부동산거래신고로 같음하고 증여, 교환 등만 해당함)
  - 나. 외국인이 상속 또는 경매 등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외국인 부동산등 취득신고를 해야 함.
  - 다. 대한민국에서 외국으로 국적이 변경된 경우 외국인으로 변경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외국인 부동산등 계속보유 신고를 해야 함.
  - 라. 국내 미 거주 외국인이 국내 부동산 취득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신고, 외국인투자기업등록을 마치고 외국인 부동산등취득신고를 한 후 국내부동산을 취득하여야 함.
- 본 아파트 공사 중 천재지변, 자연재해나 기상이변(장마, 폭우, 폭설 등), 전염병 발생, 문화재발굴, 전쟁, 내란, 정부의 정책이나 관계법령의 변경, 행정명령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정된 공사일 정 및 입주 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다는 사실과, 이 경우 입주지연에 따른 "사업주체" 또는 "시공자"의 귀책사유가 없고 지체보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 ■ 홍보물 관련 유의사항

- 온라인, 홈페이지, 각종 광고 및 홍보 유인물(조감도, 단지모형, 단지배치도 및 단위세대평면 및 부대시설 및 조경, 이미지컷 등)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개략적으로 제작된 것으로 실제 시공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특히 식재 및 시설물의 위치와 규모는 인허가, 시공여건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계약한 것으로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아파트 입주자모집공고 이전 제작, 배포된 홍보물 및 영상물 등은 사전 홍보 시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실제 시공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반드시 계약 전 견본주택을 방문하여 확인하여야 합니다.
- 각종 광고 및 홍보물(견본주택, 카탈로그, 리플렛, 전단, 공급안내, 홈페이지, 신문광고 등) 등에 표시된 주변 환경, 개발계획, 교통여건 및 각종 시설(도로, 공공청사, 학교, 철도 차도, 하천, 광장, 공원, 녹지, 공공용지 등)의 조성계획(예정사항)은 각 시행주체가 계획, 추진예정 중인 사항을 표시한 것으로 시행주체 및 국가사책에 따라 향후 변경될 수 있기에, 계약자는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 명칭

- 단지 내 명칭 및 동번호등은 관계기관의 심의결과에 따라 입주 시 본 공고의 명칭과 상의할 수 있으며, 추후 변경 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공동주택의 명칭은 향후 관할관청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정해질 수 있으며 분양 시 입주민의 이해를 돕기 위한 동호수의 표기 또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당해 사업에 사용된 시행사 및 시공사의 C, B등은 향후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 "오션더캐슬(ocean the castle)"은 현재 심판계류중인 표장으로서 심결의 결과에 따라 다른 내용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설계고지사항(단지외부사항)

- 단지와 인접한 도로 등으로 인해 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니 이점을 인지하시고 청약 신청 및 계약 체결하여야한다. 이로 인한 방음벽 설치 등을 요구하거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주변 도로, 공원, 녹지 계획, 하천 계획, 가스, 학교 등 기반시설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작성된 것으로 사업부지외의 개발계획 및 기반시설은 국가 기관, 지자체, 해당공사에서 설치하므로 사업추진 중 변경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인접도로와 당 사업지 내 레벨차이에 따른 보행자 동선 계획은 차후 실시공시 도로와의 관계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습니다.
- 지역 내 및 그 외 타 지역의 타사 분양 아파트의 마감사양, 설치 부대편의시설 및 조경과 본 아파트를 비교하여 견본주택 및 사업계획승인(변경)도서에서 제시한 사항 외에 추가적인 마감사양 및 부대편의 시설, 조경의 설치 또는 교체를 요구할 수 없으므로 타 분양 아파트와 충분히 비교 검토한 후 청약 신청 및 계약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사용검사 때와 달리 입주 후 교통량 증가 등 주변 여건 변화로 소음이 심화될 경우에는 행정청에 이의제기 및 보상 요구를 할 수 없으므로 소음에 대한 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시고 분양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 설계고지사항(단지내부사항)

- 주차대수는 법적 주차대수 이상으로 계획되어 있으나, 입주자별 차량 소유대수에 따라 입주 후 주차공간에 대한 불편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주차장 진입 유효높이 및 주행로 높이는 2.3m 이상 확보되어 있습니다.
- 공동주택 주차장은 지상1층 ~ 지상4층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 근린생활시설 주차장은 단지 내 도로 상 별도 설치 예정으로 통행에 불편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주차장 천장에는 각종 배관, 배선, 장비 등이 노출될 수 있습니다.
- 본 단지의 명칭, 동 표시, 외부색채와 외관, 옥탑디자인, 외부조명시설, 담장, 편의시설물, 안내시설물, 동 출입구, 외부난간, 형태 및 높이, 단지 조경 및 기타 「주택법」, 「건축법」 등에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 등은 현장 여건 및 인허가 관청과의 협의, 협의과정에서 향후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 내 계획은 본 시공시 현장 여건에 맞게 설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아파트 옥탑 및 지붕에 의장용 구조물(야간경관용 조명 등), 위성안테나, 피뢰침, 태양광설비, 이동통신용 설비(안테나) 등의 시설물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소음, 진동 등의 환경권과 조망 및 빛의 산란 등에 의한 사생활권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배치 상 향별, 층별 차이 및 상호간의 향, 층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환경권 및 사생활권이 침해당할 수 있으므로 계약자는 이 사실을 사전에 충분히 확인한 후 청약신청 및 분양계약을 체결해야하며, 향후 이에 대해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아파트 외관 구성 상 일부 세대의 전, 후면 발코니, 세대외벽 및 옥탑 상부 등의 위치에 장식물(경관조명 등)이 부착될 수 있습니다.
- 아파트 주동 형태에 따라 세대별 프라이버시 침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관련법령의 변경, 인허가 과정 및 현장 시공시 외관 개선을 위하여 건축물 외관(지붕, 옥탑 등), 축벽(문양 포함), 동출입구, 창틀모양 및 색, 건축물 색채, 난간의 디테일, 부대복리시설, 급, 배기를 위한 덕트 공간, 실외기실 형태, 주차장 램프 형태 등은 입주자 동의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내 주차장 및 펌프실, 전기실 등의 환기와 재연팬의 급/배기를 위하여 환기구가 지하 및 지상에 설치되므로 사전에 배치도 및 분양홍보물을 참조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단위세대, 주차장, 부대복리시설, 커뮤니티, 조경공간 등은 실시공시 인, 허가청의 업무처리 과정에서 현장여건에 따라 면적과 계획이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각 세대의 기타공용면적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각종 포장부위의 재질, 색상 등은 현장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민공동시설 등 단지 내 시설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유지, 보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일체의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시설물에 대한 계획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부대복리시설의 내부 마감은 최초 계획과 다르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쓰레기 분리수거함 위치는 주차장 주출입구 맞은편에 설치될 예정이며, 이용성 및 지자체 조례 등의 최종 검토결과에 따라 위치 및 개소가 일부 조정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부에는 생활폐기물처리장소가 설치될 예정이며, 이로 인하여 냄새, 소음, 분진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폐기물 수거차량의 상시 접근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니 청약신청 및 계약체결 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한 이의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 현재 사업계획승인(변경)도서 기준 외에 추가로 출입구의 설치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 주차장과 연결통로공간, 지하부분 계단실은 계절에 따라 결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환기를 철저히 시행해야 합니다.
- 주차장은 주차대수 최대 확보를 위하여 기동간격이 일정하지 않은 곳에 조성된 일부 주차면에는 기동과 간섭(운전석 및 조수석)되어 승하차시 불편할 수 있습니다.
- 하절기 주차장 습기제거 및 배기가스 배출용 배기팬 가동관리 불량으로 인한 주차장 습기, 결로 발생 등의 하자 및 사고는 사업주체와 무관하므로 이의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 단지 내 주차장은 주차 형평성을 고려하여 계획되었으나 입주 후 주민자치 기준에 따라 운영되어 동별, 상가별 주차 영역을 한정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현재의 주차계획안에 대한 이의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 엘리베이터 운영에 의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근린생활시설 또는 주민공동시설 등 부대복리시설에 인접해 있는 일부 세대는 지상, 혹은 옥상에 설치되는 에어컨 실외기 등 장비에 의한 소음, 진동, 조망권, 환경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대한 이의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 조경공간에 시설물 환기 및 채광을 위한 시설물(환기창 및 드라이에어리어)이 노출됩니다. 시상수 급수펌프, 소화 및 기타배관 등 일부 장비가 근린생활시설과 공용으로 사용되며 이에 대한 이의 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 화재안전기준에 의거 옥내소화전의 배치 상 주차장의 일부 주차구획은 차량도어 개폐 시 간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주차장 하부 등 외기에 노출되는 배관의 동파방지를 위한 열선이 설치될 수 있으며, 사용에 따른 전기료는 단지 공용요금으로 부과됩니다.
- 최상층에 엘리베이터 제어 판넬이 설치되어 일부 소음, 진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복도 및 전용연적 천장 내부가 기계설비 및 전기설비 등 시설물의 경로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 설계고지사항(단위세대 및 마감재사항)

- 홈페이지 및 각종 광고인쇄물, 견본주택 등에 적용된 마감재 수준 이상으로의 변경 요구는 불가하므로 마감재 수준을 자세히 확인하신 후 청약 신청 및 계약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에 단열재의 위치, 벽체의 두께, 세대 간 마감 등이 상이할 수 있으며, 발코니 확장 부위는 결로현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환기 등 예방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직접 외기에 면해 상대적으로 추위를 느낄 수 있습니다.
- 생활환경(관상용식물, 샤워, 빨래건조, 가슴기 가동 등), 단열성능, 창호기밀성능 강화 등으로 세대 내부에 자연환기량 감소 및 습도증가로 결로 현상이 심하게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기적인 환기등의 예방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 에어컨 설치 및 사용시 응축수 배수관에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 거실 및 주방, 침실에 제공되는 강마루 또는 원목마루는 스팀청소기 및 물걸레 등 습기를 이용한 청소의 경우 목재의 고유한 특성상 장시간 수분 노출시 변형(비틀림 또는 변색)의 우려가 있습니다.
- 석재류 시공부위는 가공으로 인한 무늬와 색상이 동일하지 않을 수 있으며, 공극과 스크래치(자연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식탁용 조명기구의 위치는 일반적으로 식탁이 놓일 것으로 예상 되는 곳에 정하였으며, 위치변경이 불가합니다.
- 견본주택 내 설치된 등은 연출을 위한 조명이 포함되어 있으며, 연출용 조명은 본 공사시 설치되지 않습니다.
- 계약자가 희망하는 용량(규격)의 가구, 가전제품(냉장고, 김치냉장고, 세탁기 등) 등이 폭, 높이 등의 차이로 인해 배치 불가할 수 있으니 반드시 견본주택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다용도실 및 기타 출입문의 크기에 따른 가전제품, 가구 등의 출입, 설치 제한이 있으므로 계약 전 반드시 가전제품 사이즈를 확인 후 구매하시기 바랍니다.
- 골조와 이질벽체(경량벽체 및 조적벽 등)의 접합부 처리는 단열재 및 결로방지 단열재 설치 등을 위하여 골조의 일부가 조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 골조와 조적벽체 등의 이질재료가 접하는 부분에는 크랙하자 방지와 문틀 케이싱설치를 위하여 일부 마감 면과 골조의 일부가 이격되어 시공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부 커튼박스의 길이, 높이 및 형태는 천장 내부의 설비 및 전기 배관등의 시설물 위치로 인하여 변경 시공될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는 공동주택 바닥 충격음 차단구조인정 및 관리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20-212호)을 준수하였으므로 층간 소음, 진동 등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인허가 과정 및 공사 과정 중 이용효율 개선을 위해 주방가구와 수납공간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개인적인 확장공사 또는 인테리어 공사 등으로 인하여 세대 내 외부 파손 및 훼손사항은 본인 책임으로 원상복구 하여야 합니다.
- 단위세대 내에 실별 가구(장농, 불박이장 등) 설치 시 반드시 실측하여야 하며, 마감재 및 단열재 두께차이 등으로 인하여 도면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현관디딤판, 주방상판 등에 사용되는 천연석 및 인조석은 천연자재의 특성상 색상과 질감이 균질하지 않을 수 있고, 본 공사 시 견본주택에 설치된 자재와 색상 및 석재의 곁은 다를 수 있으며, 공장생산자재(타일 등)의 경우 자재 자체의 품질 상 하자의 판단기준은 KS기준에 의해 결정합니다.
- 발코니, 욕실, 현관 등 단차부위 시공오차가 있을 수 있으며 욕실의 단차는 침실 내부로 물넘김을 방지하기 위해 계획된 것으로 욕실 바닥구배 시공으로 인해 구간별로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홈페이지 및 견본주택에는 전기콘센트 및 스위치류의 일부만 표기될 수 있습니다.
- 실시공시 아파트의 서비스면적에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면적 증감 시 분양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 본 아파트는 개별난방으로서 난방용 가스는 개별가스에서 공급(저압)될 예정이며, 외부에 가스관이 부착될 예정입니다.
- 세대 내 주방가구, 일반가구(불박이장 등), 욕실장 등의 비노출면(바닥, 벽, 천장)은 별도 마감이 시공되지 않습니다.
- 주방가구(아일랜드 포함)와 접하는 측면, 후면, 하부면에는 타일 및 마감재가 시공되지 않습니다.
- 세대 내부 마감자재의 색상 등이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동일 모델로 설치한 경우에도 당초 색상, 디자인과 달리 보일 수 있습니다.
- 타일은 고유한 물성에 의하여 휨발생이 있을 수 있습니다.
- 타일공사 중 떠붙이기 시공 시 모서리 등 일부에 공극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단, 예폭시 시공은 예외입니다.)
- 84㎡A타입의 침실1과 침실2 사이 그리고 침실1과 거실 사이 벽은 가변형인 경량(석고보드)벽체로 시공되므로 소음 등 생활상 불편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수분양자가 침실1과 침실2 사이 벽을 털어 확장침실로 사용하고자 할 경우 혹은 침실1과 거실 사이 벽을 털어 확장거실로 사용하고자 할 경우 입주 후 수분양자의 부담과 책임으로 철거 및 시공하여야 합니다.

■ 설계고지사항(기타사항)

- 각 세대의 발코니에 필요시 선홍통 및 드레인 등이 계획 시공되어질 수 있으며, 발코니 사용 또는 우천 등으로 인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수전이 설치되지 않은 실외기실, 대피공간은 배수설비가 설치되지 않습니다.
- 세대 발코니는 동절기 관리소홀로 인한 수도 및 기타 물이 들어있는 배관동파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차장은 인허가 도서에 준해 설치되며, 해당 천장고 초과 차량은 출입할 수 없습니다.
- 재해방지를 위한 풍동실험을 실시하고 반영하였고 수해방지를 위하여 지상주차장을 설치하였습니다.
-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의해 내진설계가 되어 있으며, 동 기준에 의한 내진 능력은 수정 메르칼리 진도 등급 VII-0.197g입니다.

■ 부대복리시설

- ※ 다음과 같은 부대복리시설 관련 주요사항을 청약 전에 반드시 확인·숙지하기 바라며, 추후 미확인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근린생활시설을 제외한 부대복리시설은 영리를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부대복리시설은 입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유지, 관리 및 운영을 하여야 합니다.
- 부대복리시설은 법적으로 설치 의무가 된 관리사무소, 주민공동시설(체력단련실, 입주자대표회의실, 키즈놀이방), 지상주차장, 근린생활시설 등이며 기타시설로 자전거 보관대, 쓰레기 분리수거장 등이 설치될 예정입니다.(사업주체 협의결과에 따라 부대복리시설이 변경될 수 있음)
- 부대복리시설의 구성 및 건축 계획은 공간 활용의 개선을 고려해 실 배치 계획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분양 이후 설계변경 필요 시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근린생활시설, 관리사무소 등의 에어컨 실외기 설치로 인한 인근세대의 소음 등의 환경권 간섭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분양자료 등의 시설물 안내도를 계약 시 반드시 확인하시고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주출입구, 지상주차장은 교통통제의 편리성 및 효율성을 위하여 일부 변경 및 이동하여 설치될 수 있으며, 설계변경 필요 시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부대복리시설의 내부평면계획은 인테리어 특화디자인 계획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부대복리시설의 외관 및 색상, 마감재료, 내부공간구획 등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관리사무실, 주민공동시설 등 부대복리시설은 기본 마감만 제공되고 집기류는 포함되지 않습니다.(단 체력단련실 집기류 포함이며 사업주체와 시공사의 협의에 의하여 집기를 결정하고 설치하는 것으로 이에 대하여 입주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지상주차장, 부대복리시설 등 단지 내 부대시설 이용에 대하여 각 동별 계단실 등의 위치에 따라 거리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배치 및 이용여건 등에 대해 충분히 확인 바랍니다.
- 지상주차장 및 기타 공용면적에 포함되지 않는 피트 부분 등의 면적은 변경 사용될 수 없습니다.
- 분양홍보용 CG, 견본주택 내 모형 등에 표현된 부대복리시설의 실 내부구성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로서 추후 입주자의 운영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장애인관련 법규 등으로 인해 시설물의 크기, 위치, 사양, 단차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민공동시설에 설치되는 시설물은 입주자 협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근린생활시설

※ 다음과 같은 근린생활시설 관련 주요사항을 청약 전에 반드시 확인·숙지하기 바라며, 추후 미확인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근린생활시설의 대지지분은 별도 산정되어 있으나, 단지 내 아파트 부지와 별도의 대지 경계선으로 구획되지 않으므로 향후 각 대지지분에 따른 구획 및 분할을 요청할 수 없습니다.
- 근린생활시설은 별도의 분양시설로 근린생활시설의 건물 및 대지의 관리는 근린생활시설의 수분양자들이 하여야 합니다.
- 근린생활시설의 외관과 내부 건축계획의 변경은 아파트 계약자와 무관하게 설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근린생활시설의 실외기는 외부로 노출되어 옥외에 시공될 수 있으며, 소음 및 진동이 전달될 수 있습니다. 계약 시 반드시 확인하시고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근린생활시설의 주방배기 덕트는 외부로 노출되어 옥외에 시공될 수 있으며, 소음 및 진동이 전달될 수 있습니다. 계약 시 반드시 확인하시고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근린생활시설은 상업시설의 영업을 위한 화물차 등의 입, 출차 및 이용자들로 인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근린생활시설 전면 가로에는 인허가 및 기타 여건에 의해 가로수가 설치될 수 있으며, 근린생활시설 계획은 동선, 기능, 성능 개선을 위하여 설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근린생활시설이 단지 내부에 설치되어 근린생활시설 이용 차량(하역 차량 포함)과 이용자에게 의한 환경권 및 사생활권이 침해될 수 있으며, 이들의 출입을 제한할 수 없습니다.

입주자 모집공고일		2024년 02월 16일(금)
일반공급	1순위 신청	2024년 2월 26일(월)
	2순위 신청	2024년 2월 27일(화)
당첨자발표		2024년 3월 05일(화)
당첨자 서류제출		2024년 3월 9일(토) ~ 2024년 3월 13일(수)
정당계약		2024년 3월 18일(월) ~ 2024년 3월 20일(수)

총 123세대	<p>홈페이지 : <a href="http://www.oceanthecastle.com">www.oceanthecastle.com</a></p> <p>견본주택 : 경상북도 울진군 후포면 삼율리 318-7</p> <p>분양문의 : 054 - 787- 0200</p>
---------	---